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2014. 8

장동식 · 이정환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2. 선행연구 고찰 / 18
3. 연구 내용 및 구성 / 20

II. ORSA 의의 및 핵심 요소 / 22

1. ORSA 의의 / 22
2. ORSA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 24
3. ORSA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 27
4. ORSA 핵심 요소 / 37

III. 국제기구 · 주요국의 ORSA 배경 및 요건 / 47

1. IAIS / 47
2. EU / 56
3. 미국 / 66
4. 호주 / 73
5. 일본 / 82
6. 우리나라 / 88

IV.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 91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 92
2. 미래지향적 평가 / 96
3. 이사회역의 역할 / 98
4. ORSA 활용 / 100
5.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 102

■ 목차

6.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 104

7. 기타 / 109

V. ORSA 도입 · 운영 시 당면 과제 / 116

| 참고문헌 | / 123

| 부록 | / 130

부록 I. ORSA 관련 보고서 / 130

부록 II. ERM(모범사례)과 ORSA 비교 / 132

■ 표 차례

- 〈표 II-1〉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모형과 감독목적 요구자본 평가모형 비교
(Zurich 보험그룹 사례) / 26
- 〈표 II-2〉 Zurich 보험그룹의 리스크 감내능력(Risk Tolerance) / 26
- 〈표 II-3〉 리스크관리 실패사례와 성공사례 / 33
- 〈표 II-4〉 미래지향적 리스크관리의 주요 특징 / 34
- 〈표 II-5〉 ORSA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 43
- 〈표 III-1〉 ERM 프로세스 문서화 내용 / 51
- 〈표 III-2〉 IAIS의 ORSA 관련 규정 / 51
- 〈표 III-3〉 EU 솔벤시 2의 ORSA 원칙 / 58
- 〈표 III-4〉 ORSA 문서화 내용 / 65
- 〈표 III-5〉 ORSA 프로세스 및 기록·문서화(예시) / 65
- 〈표 III-6〉 미국 NAIC의 ORSA 추진 목적 / 67
- 〈표 III-7〉 ERM 체제 추진 목적과 주요 내용 / 70
- 〈표 III-8〉 우리나라 ORSA 가이드라인(안) 개요 / 90
- 〈표 IV-1〉 정량적 리스크 평가 / 94
- 〈표 IV-2〉 정성적 리스크 평가 / 94
- 〈표 IV-3〉 자본요건 준수 지속성 및 SCR 가정과의 차이 평가 / 96
- 〈표 IV-4〉 미래지향적 정량적 평가 / 98
- 〈표 IV-5〉 이사회 역할 / 99
- 〈표 IV-6〉 ORSA 활용 / 102
- 〈표 IV-7〉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 104
- 〈표 IV-8〉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 108
- 〈표 IV-9〉 ORSA 실행 빈도 / 110
- 〈표 IV-10〉 ORSA 예외 대상 / 111
- 〈표 IV-11〉 비례성 / 113
- 〈표 IV-12〉 독립적인 검증 / 115

■ 그림 차례

〈그림 Ⅱ-1〉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와 ORSA / 28

〈그림 Ⅲ-1〉 IAIS 보험핵심원칙 변화(보험핵심원칙 16 기준) / 48

〈그림 V-1〉 ORSA 체제 내 수익관리 · 리스크관리 · 자본관리 관계 / 119

요 약

I. 서론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써,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함.
 -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 유보를 유도하여 저성장 및 저금리 등 잠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독제도로 인식됨.
-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 권고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유럽연합(EU) 등은 ORSA 제도를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임.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도 Basel II 에서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CAAP)” 제도를 각국에 권고함.
- 보험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 권고하거나 도입 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 도입을 검토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추진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의 ORSA 제도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ORSA 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봄.
 -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II. ORSA 제도 의의 및 핵심 요소

1. ORSA 제도 의의

- (목적)ORSA 제도는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의의)ORSA 제도는 감독당국 관점의 정량적 감독 한계를 극복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각된 정성적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국제기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본을 평가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ORSA 제도를 요구함.
 - 감독당국은 부실 금융회사들이 정량적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였으며, 통합 ERM 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았음을 인지함.

2. ORSA 제도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 ORSA 제도는 리스크 대상 확장, 리스크 간 상관관계 · 리스크 계수 적용, 평가 기간 확장을 통하여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함.
 -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은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 파악, 회사 시각의 정성적 리스크 및 리스크 선호 등에서 한계를 지님.
 - － RBC는 산업평균 리스크 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산업평균보다 과다(과소)한 리스크를 보유한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함.
 - －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체제에서 채택한 리스크 구조는 회사 시각의 리스크 구조와 일치하지 않음.
 - － 감독목적에 따라 설정된 리스크 선호는 회사가 주주의 리스크 회피, 신용등급 유지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리스크 선호와 일치하지 않음.

- 우리나라 보험시장도 선진시장처럼 시장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 및 지급여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독당국의 지급여력 평가모형을 보완하는 자체 리스크 평가모형이 구축되어야 함.

3. ORSA 제도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 (정성적 감독 강화)ORSA 제도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로서 감독당국의 정성적 감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 ORSA 제도는 지배구조 · 리스크 평가 등의 정성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공함.
 - － 감독당국은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대해 정성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정성적 감독은 일상적인 감독 및 검사와 RAAS 제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정성적 감독과는 차이가 있음.
 - 현행 RAAS 제도는 주로 종합검사 등 감독조치의 차별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지만, ORSA 제도는 리스크관리 및 자본적정성의 취약 요인을 발굴 및 시정하는데 활용됨.
- (리스크 지배구조 강화)ORSA 제도는 리스크 지배구조 강화를 요구하는 감독 제도로서 기능함.
 - 보험회사는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평가 원칙과 이를 실행하는 절차, 즉 리스크 지배구조를 강화하여 의사결정의 오류로 인한 재무적 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ERM 체제보다는 계리모형, IT 차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기존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의사결정 체계로 변화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리스크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국제기준 정합성)ORSA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제감독기준에 대한 준용이 요구됨.
- IAIS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감독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EU의 솔벤시 2는 동등성 평가 제도로 인해 EU 외 국가들이 솔벤시 2와의 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4. ORSA 핵심 요소

- IAIS 등 국제기구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ORSA 실행의 핵심 요소를 보험회사(그룹)에 권고 또는 요구하도록 함.
- (포괄적 리스크 평가)보험회사는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모두 식별·평가하여야 함.
- (경제적 자본모형과 지급여력)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경제적 자본에 의한 지급여력 포지션을 감독당국에 설명하여야 함.
-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니즈 평가)보험회사는 중기 사업전략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간 지급여력 니즈를 평가하여야 함.
- (이사회 역할)보험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 선호, 적절한 자본 수준·자본원천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관리도구 역할)보험회사는 ORSA를 경영 계획 및 전략에 따라 리스크와 지급여력 요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 (내부보고 및 외부보고)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감독당국 등은 ORSA 프로세스 및 ORSA 실행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그룹 ORSA 평가)보험그룹은 그룹의 리스크관리와 현행 및 장래 지급여력을 평가하여야 함.
- (ORSA 실행시기, 제3자 검증 등)보험회사는 ORSA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적으로 ORSA를 검증하여야 함.

Ⅲ. 국제기구 · 주요국의 ORSA 추진배경 및 요건

1. IAIS

- IAIS는 진전된 보험감독체계 및 금융시장 발달, 금융위기 교훈, 금융부문평가 제도(FSAP)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ORSA 관련 규정을 수립함.
 - IAIS는 지급여력 목적의 ERM 관련 규정인 「보험핵심원칙 16」과 「기준 및 가이드스」를 2002~2011년 기간에 걸쳐 마련함.
- 「보험핵심원칙 16」과 「기준 및 가이드스」는 ERM 체제, ORSA 관련 총론, 경제적 자본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 계속성 분석으로 구분됨.
 - (ERM 체제)보험회사는 ERM 체제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식별하고 측정하여야 함.
 - (ORSA 총론)ORSA의 목적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현재 및 장래 지급여력 수준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임.
 - (경제적 자본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은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하에 경제적 자본을 산출하며, 감독목적 요구자본 보유를 입증하여야 함.
 - (계속성 분석)보험회사(그룹)는 장기간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입증하고 중기 사업전략에 나타나는 질적·양적 리스크를 반영하여 장래 재무상황을 예측하며, 장래 지급여력 니즈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2. EU

- EU는 정성적 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리스크관리의 정성적 요인과 적합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ORSA 관련 규정을 수립함.
 - 2008년 유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CEIOPS)는 ORSA 원칙과 요건을 제시함.

- 2009년 유럽의회(EP)는 ORSA 원칙·요건을 포함한 「솔벤시 2 지침」을 채택함.
- 2012년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ORSA 가이드라인(안)을 공표함.

■ ORSA 가이드라인(안)은 비례성 원칙, 지급여력 준수 평가, 미래지향적 전망, 의사결정(리스크관리, 자본관리) 활용, 하향식 접근법의 특징을 지님.

- (비례성 원칙)보험회사는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에 적합한 ORSA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며, 리스크 구조와 지급여력 니즈에 대한 견해와 리스크 대책을 ORSA 프로세스에 포함시킴.
- (지급여력 니즈 평가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 준수)보험회사는 ORSA 실행의 핵심 목적으로 보험회사 전체에 필요한 지급여력 니즈를 평가하며, 감독목적 요구자본 및 책임준비금 준수를 평가함.
- (미래지향적 전망)보험회사는 ORSA의 일환으로 계속기업을 상정하여 미래시점에서의 존속 가능성과 이때의 필요자본 확보 여부를 평가함.
- (경영전략 의사결정에 활용)ORSA 효과 제고 측면에서 ORSA 결과를 자본관리, 경영계획, 상품개발, 상품설계 등 경영전략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함.
- (보험그룹 ORSA)보험그룹은 그룹 구조 및 그룹리스크 형태의 특징을 반영하는 그룹 ORSA를 구축하여야 함.
- (ORSA 문서화)보험회사는 ORSA 프로세스와 더불어 ORSA 정책, ORSA의 활동 기록, 내부 ORSA 보고서, 감독 당국 ORSA 보고서 등과 같은 문서를 보유하여야 함.

3. 미국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조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ORSA 모델법과 ORSA 매뉴얼을 제정함.

- NAIC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를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적용 예정인 ORSA 모델법을 2012년 9월 제정하고, 감독당국 제출 ORSA 요약보고서 내용을 규정하는 ORSA 매뉴얼(안)을 2013년 3월에 발표함.

- ORSA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ORSA 모델법은 보험그룹 및 대형 보험회사의 리스크 식별·평가·감시·관리·보고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ORSA 매뉴얼은 ORSA 요약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ERM 체제)ORSA 요약보고서는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식별, 리스크 감내능력, 리스크관리 통제 등 ERM 체제를 구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리스크 규모 평가)ORSA 요약보고서는 정상 상황 및 위기 상황의 정량적·정성적 리스크 규모를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보험그룹의 리스크 대비 자본 평가)ORSA 요약보고서는 보험그룹의 리스크 자본을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 이는 리스크 선호 등을 기초로 하여 리스크에 따른 손실을 가용자본으로 흡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
 - (보험그룹의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평가)ORSA 요약보고서는 미래지향적 그룹 지급여력을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 이는 리스크 선호를 고려한 다년간의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재무자원이 확보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4. 호주

- 호주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솔벤시 2와 같은 맥락의 리스크 감독 중심 체제로서 내부자본적정성평가체제(ICAAP) 즉, ORSA 프로세스를 도입함.
 - 감독당국은 2009년 5월 ICAAP 규정(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10월에 자본기준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에 ICAAP 실무 가이드를 공표함.
- ICAAP 규정은 이사회 역할, 감독당국 감독·평가·시정조치, 목표자본 충족 요구 등 ORSA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함.

- ICAAP 실무가이드는 이사회의 역할, 리스크 선호 및 관리, ICAAP 요건, 목표 자본 수준 결정, 검증,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 (이사회 역할)이사회는 보험회사의 감독목적 요구자본 요건 준수와 리스크 구조에 상응한 자본 보유를 보증하여야 함.
 - (리스크 선호 및 관리 체제)이사회는 리스크 선호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리스크관리 체제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함.
 - (ICAAP 요건)리스크 대상, 비례성 원칙, 미래지향성, 그룹리스크, 목표자본 설정, 문서화 등은 ICAAP의 핵심 요건임.

5. 일본

- 일본은 감독당국 내부분서인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및 「보험검사 매뉴얼」에만 ORSA를 규정하고 있음.
 - 2009년 동 지침에 ORSA와 관련있는 “리스크관리”를 재무건전성 평가항목에 추가하였고, 2011년에는 이를 동 매뉴얼에 추가함.
 - 2014년 2월에 동 지침 및 동 매뉴얼에 ORSA를 명시적으로 기술함.
 - － 신설된 ERM 평가항목에 기존 항목인 “리스크관리”, “운영리스크관리”, “시스템리스크관리”, 및 “경영지속적 체제(BCM)”을 재배치함.
 - － 또한 리스크 식별 및 리스크 구조, 리스크 측정, 리스크관리 정책, ORSA, 그룹 기반 ERM, 보고 등을 추가함.
 - 이때 일본 감독당국은 ORS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IMF의 권고를 감안함.
- 그런데 동 지침 및 동 매뉴얼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등과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평가·검사 시 착안점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서술한 ORSA 요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IAIS와 EU 등과 달리 감독자 및 평가자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ERM·ORSA를 보다 더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로 인해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 등과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를 지님.

6.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국제적 정합성 및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해 ORSA 도입을 추진함.
 - 2013년에 ORSA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월에 ORSA 가이드라인 시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단계 시범운영이 실시되고, 이 기간에 파일럿 테스트와 법제화가 진행됨.
-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칙, 통제구조, 리스크 평가, 지급여력 자체 평가, 감시 및 보고 등으로 이루어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
 - 국제적 정합성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ORSA 가이드라인(안)은 주요국의 ORSA 요건들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ORSA 핵심 요소인 정량적·정성적 리스크 평가, 미래지향적 시각, 정기적인 실행, 비례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함.

IV.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 제4장에서는 IAIS, EU, 미국 및 호주의 ORSA 핵심 요건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ORSA 규정(안)의 특징을 살펴봄.
 - 주요국 감독당국이 IAIS의 감독규정 이행을 통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ORSA 핵심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지만 검토 방식 및

검토 수준의 차이로 각국 ORSA 요건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음.

-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정합성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의 ORSA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 리스크 평가)IAIS 등은 감독자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중요한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인식함.

- 감독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그룹)의 관점에서 중요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식별·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IAIS 및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보험회사(그룹)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량적·정성적 리스크를 모두 식별·평가할 것을 요구함.
- 우리나라 역시 보험회사에게 스스로 현재 및 미래 지급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리스크를 모두 인식하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통합 내부자본 산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
-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 (미래지향적 평가)IAIS 등은 보험회사(그룹)가 현재 시점의 지급여력과 미래 지급여력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사업지속 능력과 이에 요구되는 재무자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IAIS 및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보험회사(그룹)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장래 지급여력을 평가할 것을 요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지향적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및 미래 지급여력 적정성 평가에 대한 원칙만 제시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보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비계량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계량화시키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 (이사회 역할)IAIS 등은 ORSA 효과를 제고하는 전제조건으로 이사회에 ORSA의 주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인식함.
 - 우리나라는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게 ORSA의 방향 설정, 프로세스 구축, 평가, 결과, 검증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과함.
 - 이사회를 위험관리위원회로 대체하는 경우 ORSA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현행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을 재정립하여야 함.

- (ORSA 활용 범위)IAIS 등은 공통적으로 ERM 체제를 ORSA 활용이 기대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차별적으로 강조되는 ORSA 활용 영역이 존재함.
 - 미국은 보험그룹리스크관리를, EU는 최소한의 요건 준수, 호주는 의사결정 과정을 ORSA 활용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리스크 감내능력 설정, 리스크 통제 및 성과 평가 등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을 ORSA 활용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음.
 - ORSA 활용에 대한 방향성은 주요국과 동일하지만 경영관리 및 의사결정 등 활용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ORSA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ORSA 활용을 향상시켜야 함.

-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IAIS 등은 보험그룹 ORSA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ORSA 실행 수준과 대상에서 국가별로 다소 차이점이 있음.
 - EU는 보험그룹과 자회사 각각에 대해 ORSA 실행을, 미국은 보험사업이 영위되는 방식에 따른 ORSA 실행을 요구하나 호주는 자회사가 감독대상에 해당되면 모그룹과 관계없이 ORSA 실행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요 리스크의 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

식하고 감시하여야 하며, 이때 연결기준의 ORSA 실행을 요구하고 있음.

- 주요국과 비교할 때 그룹리스크에 대한 식별, 이에 대한 예시, 예외 대상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IAIS를 비롯하여 주요국은 ORSA 관련 문서작성 기준을 제시하며 ORSA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 IAIS와 EU는 문서 작성에 대해 포괄적 내용 또는 최소 기준만을 제시한 반면 미국과 호주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정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미국과 호주처럼 문서작성 내용, 적정성 검증, 감독당국 보고 등에 대해 최소기준을 제시함.
-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이사회를 리스크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이를 ORSA 도입·운용 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실행 빈도 및 시기)주요국과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ORSA 실행을 요구하며 리스크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ORSA 실행을 요구함.

- 다만 EU는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최소한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함.

■ (예외대상)IAIS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ORSA 실행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각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상이하게 규정함.

- 주요국은 보험회사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에 의해 적용 대상을 선정하며 그 기준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을 다르게 규정함.
- 우리나라는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를 ORS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이 요건에 의한 ORSA 적용 예외 대상 역시 보험계약자의 미래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감독당국은 제도 정착 후 이들 회사를 위한 약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례성)주요국은 원칙 중심의 감독을 지향하면서 ORSA 실행과 검증에 사업과 리스크의 특징·규모·복잡성을 감안하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함.
 - 우리나라 역시 보험회사의 ORSA에 비례성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RSA 체제 구축과 운용 부문에 대해 적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독립적인 검증)ORSA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ORSA 프로세스 전반 특히,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 부문을 검증하는데 필요함.
 - IAIS는 ORSA 프로세스 전반, EU는 ORSA 관련 지배구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는 엄격한 의무화를 요구함.
 - 우리나라는 ORSA 통제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함.

V. ORSA 도입·운영 시 당면 과제

-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보험 감독제도와와의 관계 정립,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 능력 강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 관리 능력 강화, 보험회사의 불확실성 대응 능력 강화 등이 당면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감독당국은 RAAS 제도와 ORSA 제도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현행 제도와 ORSA의 적절한 조화로 보험회사의 보고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RAAS 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화하여 감시 수위 및 종합검사 주기를 차별화하는데 활용되는 반면, ORSA 제도는 리스크 관리의 취약요인 발굴 및 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럼에도 RAAS 평가항목과 ORSA 핵심 요건들이 많은 부분에 중복되며, 이에 보험회사들은 두 제도를 중복 감독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ORSA 제도 도입 시 RAAS 제도와의 관계, 회사 특성별 보고 표준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보다 앞서 ERM 실태 조사 및 ORSA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보험 회사의 ORSA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선진보험회사들이 ERM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선진감독당국은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의한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ORSA 제도를 도입함.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ERM 모범사례와 ORSA 요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ORSA 요건 준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ORSA 체제에 이해관계자의 특성을 반영할 때 비로소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 선진보험그룹은 감독목적 자본적정성, 신용평가목적 자본적정성, 주주목적 자본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음.

○ ORSA가 도입된다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선진보험그룹처럼 감독 관점, 신용평가 관점, 경영 관점 등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하여야 함.

■ 넷째, 감독당국은 불확실성 관리를 능동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ORSA는 보험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요구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새로운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2013년에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제도(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¹⁾를 도입한다는 감독정책방향을 수립하고, ORSA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ORSA는 보험회사에게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 지급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보험회사는 “스스로 리스크관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내부 절차(이하 ORSA 프로세스)”를 통합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 이하 ERM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ORSA 프로세스와 “ORAS 프로세스를 실행한 결과(이하 ORSA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이 제도 하에서 보고받은 ORSA 프로세스와 ORSA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검토하기 시작한 ORSA는 보험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 유보를 유도하여 저성장 및 저금리 등 잠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제도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²⁾ 즉,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이하 IAIS),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등은 이 인식 하에 ORSA를 각국 감독당국에 권

1)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금융권역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은행권과 동일하게 ORSA를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관리제도”라고 규정한다.

2) 금융감독원(2013a), “2013년도 보험감독업무 추진계획,”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p. 7.

고하고 있다.

먼저 IAI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감독기준을 제정·권고하는 기관으로 강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지급여력 목적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보험핵심원칙 16(Insurance Core Principle 16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Solvency Purpose, 이하 ICP 16)”을 통해 ORSA를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유럽 외 감독당국들에게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건전성 감독체제인 solvency II(이하 솔벤시 2)에서 EU 관련국 감독당국에 ORSA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는 바젤 2를 통해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이하 ICAAP)”를 권고하고 있다. BCBS(2006)는 감독목적 규제자본관리와는 별도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방법에 의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동 리스크를 감안한 적정자본을 유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점검하여야 한다고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하였다.³⁾

이와 더불어 BCBS는 “금융회사는 자사의 리스크 구조와 관련한 전사적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와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감독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BCBS는 이 원칙에 따른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감시(board and senior management oversight), 건전한 자본관리(sound capital management), 포괄적 리스크 평가(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감시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내부통제 점검(internal control review) 등을 ICAAP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BCBS가 제시한 이러한 ICAAP 핵심요소는 IAIS와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ORSA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ORSA는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3) 고일용(2005), 「신BIS협약: 필라 2의 이행」, 『Risk Review』, 2005년 여름호, pp. 195~202, 금융감독원.

도입이 검토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 도입을 검토하여야만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회사만 ORSA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감독당국 등이 보험감독에 대해 은행감독제도 및 국제보험감독제도보다 뒤쳐진다고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또한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능력을 다른 금융권 또는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영업계획 수립, 배당결정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보험권역도 ORSA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ORSA는 아직 보험회사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생소한 제도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이나 보험회사는 ORSA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ORSA는 감독당국이 현행 정량적 감독제도인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제도(Risk Based Capital, 이하 RBC)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보험회사의 고유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RSA는 감독당국이 수행하는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통제능력 등 경영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리스크 기준 경영실태평가 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이하 RAAS)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장점을 지닌 ORSA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ORSA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각국 추진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RSA를 권고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권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ORSA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포괄적 리스크 평가, 경제적

4) 정신동(2013), “솔벤시 II와 RBC제도의 비교분석: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금융학회 2013년도 정기학술대회, p. 23.

자본모형에 의한 지급여력 평가,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니즈 평가, 이사회 역할, ORSA 활용, 내부보고 및 외부보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가 리스크 중심 감독 및 리스크 중심 경영을 제고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를 통해 감독당국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보고서의 이러한 기여는 리스크관리 실태 분석과 보험회사 현실 등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선행연구 고찰

현재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ORSA는 정량적 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성적 감독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정성적 감독 수단으로서의 ORSA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이하 ERM)와 경제적 자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ORSA와 같은 정량적 감독 한계를 보완하는 정성적 감독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Cummins et al.(1995, 1999), Grace et al.(1998), Pottier and Sommer(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보험회사의 부실 예측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제도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감독수단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정량적 감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유병순(2009)은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 및 핵심위험지표를 통한 운영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정성적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신동(2013)은 솔벤시 2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성적 감독수단인 ORSA를 우리나라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 체제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정성적 감독제도라고 판단하였다. 조재린 외 2인(2013, 2014)은 현행 RAAS를 실질적으로 계량

항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라는 평가를 통해 국제적인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정량적 감독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성적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 연구로는 이봉주(1999), 이봉주·박동규(1999), 류건식·정석영(2001, 2004), Linbenberg·Hoyt(2003), Hoyt(2006), 최영목 외 2인(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가 보험회사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리스크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위한 ERM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ORSA의 핵심 요소인 경제적 자본에 대한 연구로는 Harrington·Niehaus(2004), FaRR et al.(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리스크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있고 동 가치가 미래의 현금흐름에 좌우되므로, 기업은 현금흐름에 관련된 리스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FaRR et al.(2008)은 자산과 부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경제적 자본 측정에 선진 보험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ORSA의 요구와 달리 주주만을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로 한정하고 있다.

ORSA의 핵심요소인 지급여력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김해식 외 3인(2011), 장동식(2009) 및 오창수 외 3인(2012) 등의 연구가 있다. 김해식 외 3인(2011)은 감독목적 요구자본 계산을 위한 내부모형에 역점을 두고 모형 선택유인을 분석하여 내부모형제도의 도입형태, 제도 시행에 따른 고려 사항과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장동식(2009) 및 오창수 외 3인(2012) 등은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에 역점을 두어 정성적 감독 수단으로 ORSA를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

ORSA는 리스크 지배구조에 대한 요건을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구정환·이시연(2011), G30(2012, 2013)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국제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 바림직한 리스크 지배구조를 고찰하여 이사회 리스크관리 책임 강화, 리스크관리 임원(Chief Risk Officer, 이하 CRO)의 독립성 강화 및 CRO 양성시스템 구축, 금융지주회사의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리스크 문화 확산을 위한 의사소통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G30(2012)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지배구조가 금융부문의 의사결정의 심각한 실패를 야기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아울러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리스크관리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G30(2013)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당국과 그러한 금융회사 이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실현을 위한 이사회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사회 주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30(2013)은 감독당국이 기업 지배구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모형의 전략과 리스크를 이해하며, 발생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관행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 내용 및 구성

선행연구들은 정성적 감독의 필요성과 함께 ORSA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ORSA를 소개하는데 머물지 않고, ORSA 의의 및 핵심요소를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ORSA의 핵심요소는 BCBS(2006)의 ICAAP 원칙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포괄적 리스크 평가, 경제적 자본모형에 의한 지급여력 평가,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평가, 이사회 역할, ORSA 활용, 내부보고 및 외부보고 등을 ORSA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보험감독당국의 리스크 중심 감독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위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권고하고 있거나, 채택하고 있는 ORSA 관련 원칙·기준·가이드라인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ORSA 도입을 위한 감독당국의 과제와 ORSA 실행을 위한 보험회사의 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ORSA의 의의 및 핵심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Ⅱ장에 수록하고, Ⅲ장에서는 각국 사례를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ORSA 핵심요소별로 주요국의 요건들을 비교한다. Ⅴ장에서는 Ⅱ장부터 Ⅳ장까지 검토 및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ORSA 도입·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II. ORSA 의의 및 핵심 요소

1. ORSA 의의

ORSA는 “보험회사가 직면 또는 직면할 수 있는 장단기, 대내외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 평가, 모니터링, 제어,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ORSA는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따라서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기구 등은 이 목적을 위해 보험회사에게 직면하고 있는 중요 리스크 모두를 평가하고,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ORSA를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ORSA와 관련된 리스크관리와 자본에 대한 요건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와 그 결과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ORSA 관련 문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자본 요건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화와 프로세스 결과를 포괄하여야 한다. 한편 문서화는 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바가 다르지만,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본 요건을 결정하는 필요 프로세스에 관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일관되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ORSA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과 ORSA 프로세스 관련 특정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ORSA의 목적을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ORSA 프로세스들은 이 목적을 위해 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특징·규모·복잡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당국들이 ORSA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ORSA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는 감독당국의 행위는 ORSA가 리스크와 지급여력 포지션

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단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계획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보험회사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을 감안하여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 리스크를 흡수하기 위한 요구자본을 계상하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ORSA는 보험회사에게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 포지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장래 지급여력을 전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ORSA는 이사회 역할, 리스크 평가, 지급여력 평가,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전망, 내부·외부 이해 제고, 그룹 정보 제공, 지속적 프로세스 보증, 문서화 보증 등을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ORSA 요소 상당부분은 이미 선진보험회사의 현행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자본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같은 ORSA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정성적 감독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감독제도이다. 보험회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증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체제인 ERM을 요구받았고, 감독당국 역시 보험회사의 ERM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험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기관의 ERM이 감독당국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실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정량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이 감독당국 등에게 ORSA에서 요구하는 통합된 ERM을 실행하고 있다고 인식되었지만, 부실 금융회사들은 실제로 ORSA에서 요구하는 통합된 ERM을 실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교훈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게 스스로 리스크관리와 자본을 평가하는 ORSA를 요구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 ORSA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은 보험회사의 고유 리스크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는 현행 정량적 감독 수단에 감독당국의 관점만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기인한다. 먼저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예, RBC 표준모형)은 산업평균 리스크 계수와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결정한 리스크 간 상관관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산업 전체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중에는 상대적으로 고 리스크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은 산업평균 리스크 계수보다 더 큰 리스크 계수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은 감독당국의 시각에서 계량가능한 중요 리스크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에서 채택한 리스크 구조(Risk Profile)가 보험회사 스스로 중요하다고 결정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감독당국이 계량화하기 너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여 제시한 지급여력 평가 방법에 감안하지 않은 리스크지만, 몇몇 보험회사들은 이를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몇 보험회사(또는 보험그룹)는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에 반영되지 않은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의 지급여력 평가 방법은 감독목적으로 설정한 리스크 선호(Risk Appetite)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보험회사가 경영목표로 설정한 리스크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주주의 리스크 회피, 신용등급 유지 등을 감안하여 회사 고유의 리스크 선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험회사는 감독당국과는 다른 리스크 선호를 토대로 평가한 지급여력을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이 지닌 한계들은 ORSA를 통해 보완되어질 수 있다. 먼저 ORSA는 리스크 대상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감독당국

의 정량적 감독 수단을 보완할 수 있다. ORSA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ORSA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간 상관관계, 리스크 계수 등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을 보완할 수 있다. ORSA는 보험회사 리스크 간 상관관계 및 리스크 계수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 간 상관관계 및 리스크 계수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ORSA는 평가기간을 1년보다 더 긴 기간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 수단을 보완할 수 있다. ORSA는 보험회사에게 지속영업을 위한 전략적 기간에서 필요로 하는 지급여력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경기순환, 보험가격 순환, 거대재해 순환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전략적 기간에 필요로 하는 지급여력 규모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량적 감독 수단을 보완하는 ORSA의 필요성은 선진보험그룹에서 살펴볼 수 있다. Zurich 보험그룹 등은 감독당국 방법, 신용평가기관 방법, 그리고 자체 방법 등을 모두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표 II-1〉 참조).

Zurich 보험그룹은 감독당국의 지급여력 평가모형(예, SST)을 이용하여 감독목적 지급여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후 Zurich 보험그룹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경제적 자본평가모형(Zurich Economic Capital Model, 이하 Z-ECM)을 이용하여 내부 경영목적의 지급여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때 Zurich 보험그룹의 Z-ECM은 감독목적 지급여력 평가모형에서 권고하고 있는 리스크 선호(ES 99%)와는 다른 리스크 선호(VaR 99.5%)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Z-ECM은 운영리스크에 대해 감독법규 준수, 시장오남용, M&A 실사(due diligence), 영업활동(code of business), 기타 등에 대한 시나리오도 적용하고 있다.

〈표 II-1〉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모형과 감독목적 요구자본 평가모형 비교
(Zurich 보험그룹 사례)

구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모형 (Z-ECM)	RBC 표준모형 (스위스 SST)
리스크 선호	VaR 99.95% (AA 등급 상당)	ES 99% (BBB 등급 상당)
무위험이자율	스왑 (유동성 프리미엄 미반영)	국공채 이자율 (유동성 프리미엄 미반영)
운영리스크	포함	정량적으로만 반영
자본확충 요구	반영 없음	시장리스크, ALM 리스크, 신용리스크
후순위부채 회계처리	가용자본	부채
경영 리스크 (손해보험만)	포함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포함
극단적 시장리스크 시나리오	포함(ALM 내 스트레스 버퍼)	통합적 평가

자료: Zurich Insurance Group(2013), Annual Report 2012, p. 155.

또한 Zurich 보험그룹은 Z-ECM으로 리스크 감내 수준(Risk Tolerance)을 설정하여 리스크관리에 활용하고 있다(〈표 II-2〉 참조). 예를 들어 Zurich 보험그룹은 자본할당, 부문성과 관리, 가격산출, 재보험구매, 거래평가, 리스크 최적화, 감독자·투자자·신용평가기관과의 의사소통 등에 Z-ECM를 활용하고 있다.

〈표 II-2〉 Zurich 보험그룹의 리스크 감내능력(Risk Tolerance)

Z-ECM 비율	SST
120% 초과	• 리스크 보유 확대 또는 교정 행위
100~120%	• AA 목표 범위 • 무행위
90~100%	• 리스크 환경을 감안한 특정 기간 동안 포지션 감내
90% 미만	• 그룹의 리스크 감내능력 이탈 • 적절한 교정행위 및 리스크 축소 수단 실행

자료: Zurich Insurance Group(2013), Annual Report 2012, p. 155.

한편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현재 감독당국 지급여력 평가모형(예, RBC 표준 모형)만을 지급여력 적정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지속경영을 위한 지급여력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리스크 평가모형을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리스크 양을 산출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⁵⁾

이렇듯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감독당국 지급여력 평가모형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선진보험그룹 수준으로 그룹화, 글로벌화 및 겸업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게 내부 리스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계속기업 측면과 개별회사 측면에서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선진보험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내부 리스크 평가모형을 구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선진보험그룹처럼 시장리스크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 변동성과 및 지급여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점차적으로 감독당국 지급여력 평가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내부 리스크 평가모형을 구축·활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감독당국의 ORSA 도입은 이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3. ORSA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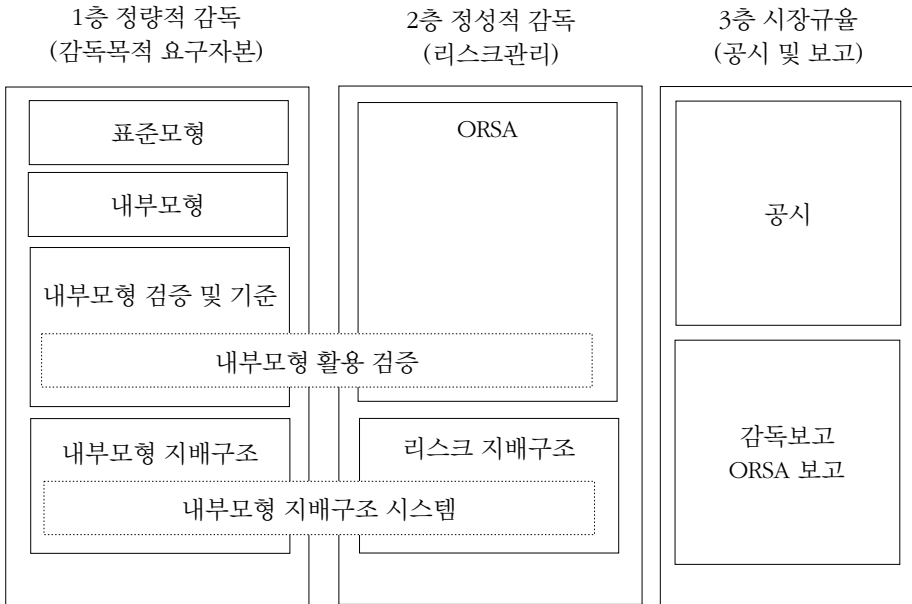
가. 정성적 감독제도로서의 ORSA

IAIS, EU, BCBS 등은 〈그림 II-1〉과 같은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를 제시하면

5) 이 회사들은 내부 리스크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리스크 양을 보험리스크관리를 위한 보유 및 재보험 전략, 금리리스크관리를 위한 자산·부채 관리 전략, 예정이율 운용 전략 등의 경영 목표를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서 정성적 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IAIS, EU, BCBS 등에서 강조하는 정성적 감독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질적 요건을 점검(이하 감독당국의 점검)하고 취약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는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의미한다.

〈그림 II-1〉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와 ORSA



자료: EIOPA(2011), Section I: General considerations No. 4.1, Consultation Paper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EIOPA-CP-11/008.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책임준비금, 요구자본, 투자관련 내규, 가용자본의 질 및 양, 내부모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행위를 결정한다. 이때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구조에 비추어 감독목적 요구자본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감독당국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리스크관리를 잘 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감독당국은 보다 더 복잡하게 리스크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독당국의 점검 기능을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필요한 양적, 질적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ORSA 역시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ORSA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고유 리스크 및 지급여력의 포지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ORSA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가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있는지, 보험회사가 외부 요인 또는 장기간 경영계획에 따른 리스크 상태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ORSA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가 자본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효과, 그리고 추가 자본 필요 시 이를 조달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ORSA는 감독당국이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과 의견을 교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ORSA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인력과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이 ERM 문제를 최고 경영진과 공식적으로 의견교환을 실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감독당국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해당 감독당국은 리스크 구조뿐만 아니라 장래 자기자본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효과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적시에 적합한 주제로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과 의견교환을 실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정성적 감독기능은 감독당국의 일상적 감독·검사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또는 상시감시의 일환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 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 또는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RAAS를 통해 정성적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 우리나라 RAAS는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화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

을 발굴하여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평가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등 총 7개 부문을 토대로 부문 평가등급과 종합 평가등급을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그 결과를 회사별 감시수위 및 종합검사 주기를 차별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⁶⁾

이 같은 RAAS는 주로 종합검사 등 감독조치의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요인의 발굴 및 시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솔벤시 2 등의 “감독당국의 점검”과 차이가 있다.⁷⁾ 이 차이는 솔벤시 2 등의 “감독당국의 점검”에 포함되는 ORSA 역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RAAS에 대해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감독요건의 이행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ORSA와 차이가 있다.⁸⁾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당국(2012a)은 상기와 같은 정성적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ORSA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이를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이 해설서에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핵심원칙(ICP 16)은 보험회사가 ERM 체제를 구축하고, ORSA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에 대한 기준 미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이 해설서에서 “은행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제도는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평가 능력을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검토”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⁹⁾

따라서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를 리스크관리 및 자본적정성에서의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활용한다면 현행 RAAS는 주로 종합검사 등

6) 금융감독원(2012a),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7) 정신동(2013), 「솔벤시 II와 RBC 제도의 비교분석: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금융학회 2013년도 정기학술대회 학술논문, p. 23.

8) 현행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ORSA에서 요구하는 ERM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RAAS 제도는 ORSA 제도에서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ERM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9) 금융감독원(2012b),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p. 159.

감독조치의 차별화 수단으로만 활용되게 될 것이다. 또한 ORSA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를 보험회사의 고유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포지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또한 과거 및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나. 리스크 지배구조 강화를 필요로 하는 ORSA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운영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신용리스크관리 부실이 그 원인 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리스크관리를 경시한 방만한 대출심사, 사취 등에 대한 검증 부재, 대출브로커 관리 실패, 서브프라임모기지채권 판매 시 설명 부족 등 운영리스크관리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Fitch 계열 컨설팅회사인 Algorithmics는 서브프라임 손실의 83%가 운영리스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불능(insolvency)도 서브프라임사태와 유사하게 표면적으로는 보험리스크관리 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운영리스크관리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⁰⁾

감독당국은 이러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스크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리스크 지배구조에서의 이사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는 리스크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리스크관리 정책 승인, 성과목표 이행 감시, 지배구조 모니터링, 경영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회사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함으로써 보험계약자, 채권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전체 또는 영업부문별 과도한 성장, 사업내용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한 지급불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10) 유병순(2009), 전계서, p. 1.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회사의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원칙과 이를 실행하는 절차를 사전에 구축하도록 하여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모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모형자체의 결함, 잘못된 사용 등에 의한 의사결정의 오류로 인한 재무적 손실¹¹⁾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실패사례 및 성공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한 금융회사들은 리스크 평가모형을 제대로 구축·운영하되 모형 한계를 인식하면서 전사적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하고, 동시에 적시에 필요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최근 파산하거나 위기에 내몰린 세계 유수의 금융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에 제대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씨티그룹은 2003년 새로운 CEO가 취임한 후 공격적인 확장전략을 통해 자기매매 및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추진하던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리스크였던 모기지 부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이를 리스크 평가모형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따라 CDO 자산이 부외로 처리되어 포지션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 같은 씨티그룹의 리스크관리가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리스크 평가모형의 한계에 대한 인식 미흡, 이로 인한 리스크 모니터링의 실패로 관련 리스크를 전사적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고 리스크 전략 채택 후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면서 회사 전체가 직접적인 잠재 리스크 대비에 소홀해진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2008년 9월에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 사례이다. 이 회사의 경우 회사 내 리스크관리 부문은 과도한 모기지 대출 및 ALM 리스크에서의 문제를 경영진에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이 회사의 경영진은 이를 ‘사업확

11) UBS(1994)는 모형의 예측오류로 일본 후지은행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과대평가하여 매입함으로써 거액 손실(6.7억 달러)이 발생하였다(오세경·김진호·이건호(1999), 「위험관리론」, pp. 100~102 참조).

장 방해'로 간주하여 관련 리스크 담당 매니저를 해고하였다. 이후 리스크관리 부문은 부정적인 보고를 자제하는 등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상실하였다. 결국 워싱턴 뮤추얼은 관련 대출의 부실화로 파산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한 CEO의 리스크 마인드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가 전사적으로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가동되지 않아 의사결정에서 리스크 요인이 배제된 것이 실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최근의 금융위기를 맞아 전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및 해결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ORSA에서 요구하는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ERM 체제보다는 계리모형, IT 차원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다. 사실, 국내 보험회사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직접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리스크관리 체계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장, 상품 등에 대한 리스크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를 회피하는 액션을 취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향후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적시에 정확한 리스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같은 VaR 수치를 가지고 승자(골드만 삭스)와 패자(리만 브라더스)가 상이한 액션을 취하게 된 배경과 각사의 리스크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II-2〉 참조).

〈표 II-3〉 리스크관리 실패사례와 성공사례

리스크관리 실패사례 (리먼 브라더스)	리스크관리 성공사례 (골드만 삭스)
• 지나친 레버리지 경영으로 인해 레버리지 비율은 33배 수준(자산의 3%만 손실이 생겨도 자본잠식 상황 발생)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년에 2번 형식적으로 실시되면서 ERM이 실패 • 폭락하는 보유상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매수를 지속	• 모델의 한계를 인식 • 모기지 상품 트레이딩의 초기손실에 대해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빠르게 경영진에 보고 • 리스크관리 부문과 영업부문의 순환보직을 통해 리스크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진행

자료: 박병수(2009),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리스크관리상의 시사점”, 금융감독원.

이러한 점 때문에 보험회사는 기술적 접근과 수치 분석뿐 아니라 조직 내 의견교환과 조율이 매우 중요해지고,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기능 위주의 리스크관리에서 전사적, 통합적 리스크관리로의 시각 전환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리스크관리가 의사결정 및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리스크 전략의 방향 전환이 선결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리스크가 ‘관리 체계’에서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감독당국은 ORSA에서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ORSA를 통해 보험회사에게 회사의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원칙과 이를 실행하는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여 리스크 관리 및 지급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ORSA는 보험회사에게 미래지향적 리스크관리를 감안하고 있는 ERM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체제는 보험회사가 현시점이 아닌 향후 경영계획 및 영업행태까지도 고려한 예측 및 예방적 차원의 미래지향적 리스크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표 II-4〉 참조).

〈표 II-4〉 미래지향적 리스크관리의 주요 특징

구분	특징
리스크관리 업무	지속적 수행
리스크관리 부문	전사적 리스크 인식과 관리
리스크관리 방식	부문 간 협조 및 통합적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대상 위험	경영 전반 리스크
리스크관리 규정	리스크관리 규정의 효율적 재구성
리스크관리 수준	리스크의 예측, 예방, 지속적 감시

또한 ORSA는 보험회사가 이사회 및 경영진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리스크에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문화(Risk Intelligent)”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ORSA는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이 중요한 리스크 모두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서로 다른 부문 간에도 효과적으로 리스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ORSA는 보험회사의 이사회가 사업모델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규모, 리스크 경감전략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ORSA는 보험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이러한 ORSA가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적용된다면, ORSA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서의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ORSA는 RAAS보다 더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서의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ORSA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감독기준으로서의 ORSA

IAIS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감독기준(예, 보험핵심원칙,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굳혔다. 금융위기 이전 IAIS는 국제보험감독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정한 감독기준에 대한 이행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IAIS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이하 FSAP)¹²⁾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별도의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2) IMF와 WB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취약성 및 리스크를 파악하여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FSAP를 도입하였다. 이는 강제성이 없어 주요국(예, 미국, 중국 등)의 불참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다 워싱턴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 모두가 의무적으로 FSAP에 참여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IMF와 WB는 G20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정기적인 FSAP 평가와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황정욱(2009), 「국제사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 대책 및 과제: 국제통화기금과 G20정상회의를 중심으로」, 『Risk Review』, 2009년 하반기, pp. 91~107, 금융감독원).

한편 EIOPA는 IAIS 내 실질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IAIS의 국제적 논의(예, ComFrame¹³⁾ 및 G-SII¹⁴⁾)에 대한 EU 공통 견해를 대표하였다. 그리고 EIOPA는 회계부문 및 감사부문의 기준 제정 기구¹⁵⁾에서 보험부문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⁶⁾

EIOPA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IAIS에서 논의하는 국제적 사항에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EU의 솔벤시 2는 각국 감독당국에게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솔벤시 2의 동등성 평가를 적용받아야 하는 국가들은 자국 감독제도와 동등성을 위해서도 솔벤시 2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솔벤시 2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EU 감독기구들과 겹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EU 감독기구들과 그룹 감독 및 리스크관리(ORSA 포함)의 겹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국 감독당국은 IAIS의 ICP와 EU의 솔벤시 2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시 이들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ORSA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NAIC는 ORSA 모델법 제정에 대해 IAIS의 ICP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⁷⁾ 다른 나라 등은 미국처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 IAIS의 ICP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RSA 도입 논의는 IMF 및 WB의 FSAP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IMF 및 WB는 2013년 4월에 우리나라에 대한 FSAP의 제1차 평가를 실시하

13) IAIS는 2011년에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4) IAIS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의 협의 하에 보험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G-SII(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등을 말한다.

16) IMF(2013), "European Union: Publication of Financail Sector Assessment Program Documentation - Technical Note on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Authority," IMF Country Report No. 13/73, p. 31.

17) 미국이 ORSA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Ⅲ-3에서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였다. IMF 및 WB는 이를 통해 IAIS의 ICS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IMF 및 WB에 ORSA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2014년 1월에 ORSA 가이드스(안)를 검토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IAIS의 ICP 16과 솔벤시 2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IAIS 및 EU(솔벤시 2)의 위상, 그리고 각국 감독당국의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ORSA 핵심 요소

가. 포괄적 리스크 평가

ORSA는 보험회사에게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모두 식별·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반영되어야 하는 리스크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리스크 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량적 감독수단인 감독목적 요구자본만으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지속적 경영을 위한 감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보험회사 지급불능 원인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보험회사 지급불능은 경영, 지배구조, 대주주/그룹 관련 문제, 즉 경영진의 능력 부족, 그룹차원의 전략과 보험회사의 이익 충돌, 모기업의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신규진출시장에 대한 경영진의 경험 또는 전문성 부족 등이 내부근본원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근본원인은 부적절한 내부통제절차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잘못된 리스크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재무적 손실을 초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¹⁸⁾

이러한 내부근본원인을 유발하는 리스크는 현행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수단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근본원인을 유발하는 리스크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내부근본원인을 유발하는 리스크를 표준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포괄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보험회사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모든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RSA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리스크 평가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만 몇몇 리스크는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정성적으로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판리스크 및 전략리스크는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리스크이지만, 그룹관련 보험회사에게는 중요한 리스크일 수 있다.¹⁹⁾ 따라서 ORSA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리스크발생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리스크 인과관계도(Causal Map) 도출, 핵심리스크지표(Key Risk Indicator) 선정 및 감시 등으로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리스크 통제 자가 진단(Risk and Control Self Assessment) 또는 경영진 자가진단(Management Self Assessment), 민감도분석/시나리오 분석 또는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유추접근법 등으로 리스크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18) 유병순(2009), 전계서, pp. 5~6.

19) 전략리스크는 매우 다양한 발생원인이 존재하고, 리스크가 실현되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비교적 큰 규모의 수익성 하락과 자본적정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반면, 전략리스크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재무제표상의 재무적 변동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가 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본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전략리스크의 경우 최근 금융회사의 대형화, 국제화로 인수/합병, 신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 결과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금융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정지훈(2007), 전계서, p. 96).

이와 같은 정성적 인식과 평가를 반영한 포괄적 리스크 평가를 통해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및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및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리스크 모두를 인식, 측정, 보고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다.

나. 경제적 자본에 의한 지급여력 평가

ORSA는 보험회사에게 경제적 자본에 의한 지급여력 포지션을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신뢰, 예상하지 못한 충격의 흡수, 미래 기회나 자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신용등급 평가, 보험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지급여력 포지션을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지급여력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규모·복잡성 및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자본을 추정하는 평가모형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모형에 의한 경제적 자본은 보험회사가 각종 리스크를 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자본의 양을 의미한다.²⁰⁾ 이러한 의미의 경제적 자본은 사업 단위의 리스크를 고려하고, 추가 자본을 얻기 위한 회사의 접근방법을 고려하고, 또한 리스크 선호를 고려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지급여력 규모이다. 이렇게 결정된 지급여력 규모는 감독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된 감독목적 요구자본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모형에 의한 경제적 자본은 감독목적 요구자본을 위해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리스크 선호, 리스크 구조, 리스크 측정 방법, 리스크 계수 등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 의한 경제적 자본은 감독목적 요구자본과 함께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가 이해하기 쉽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가 현재

20) 경제적 자본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주주들이 선택하는 자본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지급여력, 장래 지급여력, 지급여력 변화 요인 및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포지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ORSA는 지급여력 포지션에 대한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감독목적 자본모형에 의한 지급여력도 함께 평가하도록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자본모형에 의한 필요 자본과 감독목적 요구자본에서의 차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ORSA는 지급여력 평가 시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리스크 선호²¹⁾ 및 경영계획에 부합하는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는 어느 리스크가 자본에 의하여 경감되는지, 관리행위에 의해서만 경감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테스트를 지급여력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이 보험회사의 현행 지급여력 포지션과 지급여력 포지션의 변동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ORSA는 보험회사에게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독목적 자본 요건 또는 내부자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용가능한 재무적 자원의 질과 양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자본확충을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리스크 선호(Risk Appetite)는 회사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택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의 수준과 성격을 의미한다. 리스크 선호는 기업의 자본 배분과 지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 선호 설정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에 필수적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관리 전략은 상당 부분 기술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VaR(Value at Risk) 접근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정교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접근법을 달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통계적이고 정량적인 접근과 함께 정성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Risk Appetite가 리스크관리의 대표적인 전략이 되었다(송재만(2011), 전거서, pp. 14~21).

이러한 점들 때문에 ORSA는 자본 요건의 계상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신규자본 조달 또는 ORSA에서 강조되는 리스크를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자본요건의 충족을 보증하거나 리스크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니즈 평가

보험회사는 감독정책 변화, 경쟁회사 실패, 시장 확대, 신상품 개발 기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자본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이용 가능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와는 다른 상황 하에서 장래 재무상황 전망을 토대로 미래에 추가적인 자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생명보험처럼 존속 사업에 대한 미래 자본요구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감독목적 자본요건의 변화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는 미래 현금 흐름에서의 예견된 중단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현실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프로젝션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경영계획에 의한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포지션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니즈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독당국이 제시한 감독목적 요구자본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게 경영계획에 의한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포지션의 영향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게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ORSA는 이를 고려하여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등이 경영계획에 의한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포지션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니즈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경영계획 수립에 적

용된 전략적 기간 내 리스크 및 장래 지급여력을 전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전망은 자본시장, 경제적 조건, 인구 등과 같은 내부·외부 요인들에 대한 자본 포지션 민감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분석을 위해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리스크 및 지급여력을 전망하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ORSA의 미래지향적 평가는 새로운 경영 계획, 상품 개발 및 가격 설정 등을 지급여력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RSA의 미래지향적 평가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요건 및 자본요건을 포괄하여야 하며, 경제적 자본 요건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사회 역할

감독당국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부여한 자율성에 대해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감독목적 요구자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험회사의 이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회사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리스크 정도를 평가하는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모험적인 보험회사의 주주는 그렇지 않는 보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와 더 높은 수준의 실패확률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리스크 선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적절한 자본 수준과 자본 원천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이사회 역할은 ORSA에도 적용된다. ORSA는 보험회사에게 ORSA 체제, 회사의 리스크 선호, 적절한 자본 수준, 자본 원천 등의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ORSA는 이사회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이사회에 보험회사의 프로세스 및 절차가 보험회사의 리스크·지급여력 요건을 평가하는데 충분하고, 이 평가에 대해 문서화되었음을 보

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사회에 보험회사가 리스크 감내 능력(Risk Tolerance)²²⁾을 초과한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음을 보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ORSA의 요건은 이사회가 보험회사의 실패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핵심수단으로 ORSA를 활용하고자 하는 감독당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회는 ORSA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계획, 리스크 선호, 문서화된 정책, 의사소통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이사회 기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 리스크와 지급여력의 관계,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형식과 복잡성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고경영진은 리스크 구조 및 경영계획의 적절성을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ORSA 프로세스와 ORSA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ORSA 프로세스와 ORSA 결과를 승인하여야 한다.

〈표 II-5〉 ORSA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이사의 역할	경영진의 역할
•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요소로 자본계획을 조사 • 리스크 선호 및 리스크 감내 능력을 설정 • 최고경영진의 ORSA 체제 구축을 보증 • 강력한 내부 통제 및 문서화된 정책/절차를 채택·지지 • 경영진이 조직 전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보증	• 리스크의 특징과 규모를 이해 • 리스크와 적정 지급여력과의 관계를 이해 •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형식과 복잡성 이해 • 리스크 구조 및 경영계획 관점에서의 적절성 보증 • 리스크 평가, 리스크와 지급여력 연계 시스템 개발, 내부정책 준수 모니터링 방법 구축 •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요소로 자본계획을 조사

22) 리스크 감내 능력은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 관리도구로서의 ORSA

ORSA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경영계획 및 경영전략에 따른 리스크 및 지급여력 요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관리 수단이다. 이는 ORSA 실행결과가 전략 개발 및 상품 개발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실행결과가 보험 회사의 잠재적 경영행위를 개발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ERM 체제와 통합된 ORSA 체제가 전략 부문, 리스크관리 부문, 자본관리 부문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ORSA의 이 요건은 보험회사가 회사의 전략, 장단기 리스크 그리고 요구자본 등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또한 ORSA의 이 요건은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리스크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리스크와 관련 요구자본을 완전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전략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ORSA의 이 요건은 실행 결과를 전략 수립, 가격 결정, 자본 계획 수립, 전략적 계획 수립, 리스크 선호 설정, 투자 정책 수립, 보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때 충족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ORSA의 이 요건은 시나리오, 과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높은 이해를 통해 설정된 장래 시나리오에 의한 비상경영계획(Contingency Plans)을 보유할 때 충족되어질 수 있다.

바. 내부보고 및 외부보고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가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리스크관리와 자본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를 쉽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ORSA 보고서는 이해될 수 있게 간략히 요약·정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리스크 방어 체계 등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게 ORSA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ORSA 보고서는 앞서 설명

한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의 감시 기능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현행 리스크 구조와 장래 리스크 구조, 그리고 리스크 구조 변화 요인
- 경영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가용자본에 대한 적정성
- 리스크 구조에 대한 중요 변화
- 감독당국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리스크
-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영행위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ORSA 보고서는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단순하게 열거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열거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및 자본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열거는 보험회사의 경영진과 감독당국에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ORSA 보고서는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등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및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 실행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요약·서술되어야 한다.

사. 그룹 ORSA 평가

ORSA는 그룹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적정성, 그룹의 현행 지급여력 포지션과 장래 지급여력 포지션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룹 ORSA는 그룹 내 회사를 모두 포함하고, 또한 그룹 특성도 감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그룹 내 자본대체, 자산이전, 자본 이중 계상, 자본 창출, 그룹 관련 리스크(예, 전염리스크 및 평판리스크) 등은 그룹 ORSA에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그룹 ORSA는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감독당국 등에게 그룹 활동 및 그

룹리스크 노출규모²³⁾를 연결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대형보험그룹 및 국제보험그룹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그룹 내 회사들이 그룹 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룹의 리스크 구조 및 그룹의 자본 니즈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 기타(ORSA 실행시기, 제3자 검증 등)

ORSA는 정기적으로 매년 실행되어야 한다. 감독당국들은 기본적으로 ORSA를 정기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ORSA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준수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ORSA는 지속적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며, 리스크·지급여력 평가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ORSA는 보험회사의 조직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리스크 구조가 조직 변화에 따라 진화함을 감안해 일상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 또는 사업부문 매각, 시장환경 변화, 사업조정 등은 리스크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리스크 구조의 변화는 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지급여력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변환된 리스크 구조 하에서의 리스크관리 적정성과 지급여력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ORSA를 다시 실행하여야 한다.

한편 ORSA는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소형 보험회사들은 조직 내에서 ORSA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형 보험회사들은 ORSA 프로세스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이 독립적 검증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3) 리스크 노출정도(Exposure)는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를 의미한다.

Ⅲ. 국제기구 · 주요국의 ORSA 배경 및 요건

1. IAIS

가. ORSA 관련 추진경과

IAIS는 진전된 보험감독체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IMF와 WB의 FSAP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험핵심원칙 · 기준 · 가이드언스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회원국 감독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보험핵심원칙 · 기준 · 가이드언스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기는 2011년이다. IAIS는 지급여력 목적의 ERM에 대한 보험핵심원칙 · 기준 · 가이드언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11년에 「보험핵심원칙 16」을 재수립하였다. 동 「보험핵심원칙 16」은 2002년 「자본적정성 및 지급여력에 관한 원칙」²⁴⁾, 2003년 「보험핵심원칙 18: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원칙」 및 「보험핵심원칙 19: 리스크 경감 활동에 관한 원칙」, 2007년 「가이드언스 2.2.6: 자본적정성 및 지급여력 목적을 위한 ERM에 관한 가이드언스」²⁵⁾, 2008년 「기준 2.2.5: 자본적정성 및 지급여력 목적을 위한 ERM에 관한 기준」²⁶⁾등을 토대로 한다(〈그림 Ⅲ-1〉 참조). 「보험핵심원칙 16」이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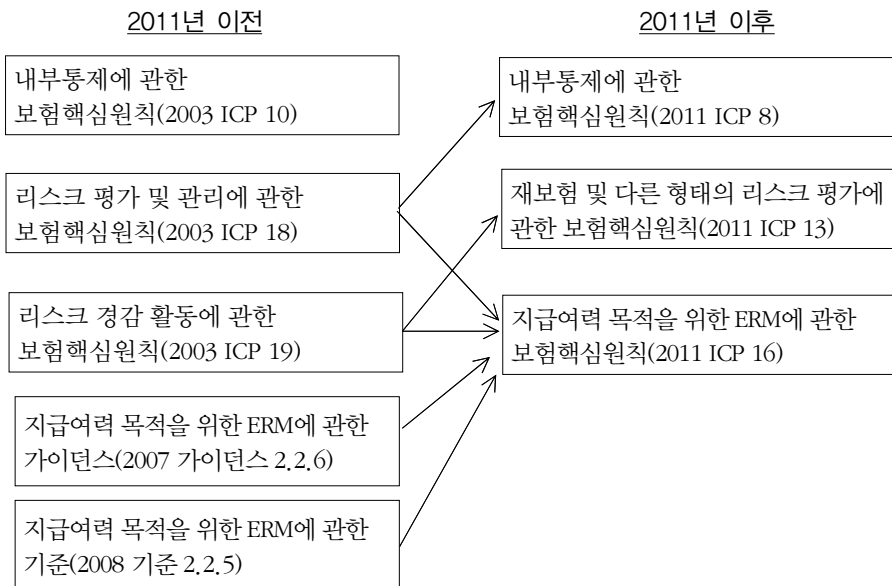
24) IAIS(2002), “Principles on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rinciples No. 5.

25) IAIS(2007), “Guidance paper 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urpose”, Guidance paper No. 2.2.6.

26) IAIS(2008), “Standard 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urpose”, Standard No. 2.2.6.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첫째, 책임준비금, 자산·부채 평가 및 감독보고에 대해 적정성, 확실성, 일관성, 객관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둘째, 자본건전성 및 통제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셋째, 보험회사의 내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고려하며, 넷째,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Ⅲ-1〉 IAIS 보험핵심원칙 변화(보험핵심원칙 16 기준)



자료: IAIS(2011a), “Revision of the insurance core principles process for review and construction”, pp. 11~12.

특히 「보험핵심원칙 16」은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의한 통제 프로세스와 내부감독, 이사 및 경영진의 적격성 검증, 내부통제(리스크관리 포함) 및 법규 준수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에 채택한 「새로운 보험감독 체제에 관한 보고서」²⁷⁾와 2006년에 채택한 「보험회사 지급능력 평가를 위한 IAIS 공통구조에 대한 보고서」²⁸⁾를 반영하고 있다.

27) IAIS(2005), “A new framework for insurance supervision: towards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보험핵심원칙 16」은 ORSA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험핵심원칙 16」이외의 다른 「보험핵심원칙」에서도 ORSA 관련 내용이 발견된다. 인가, 내부통제, 그룹감독,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부채, 자본적정성 및 지급능력을 설명하는 「보험핵심원칙」에서도 ORSA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인가와 관련된 「보험핵심원칙 4」²⁹⁾는 보험회사가 보험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요건들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가 신청자는 최저 3년간 사업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는 보험종목 및 리스크 구조를 반영하여야 하며, 설립비용 전망, 자본 요건, 사업계획, 재무 건전성 비율, 재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보험핵심원칙 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래 지급여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된 「보험핵심원칙 8」³⁰⁾은 보험회사가 비즈니스의 특징 및 규모에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해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중요 리스크를 경영지속의 관점에서 식별, 측정, 감시, 통제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핵심원칙 16」의 ORSA 체제와 ERM 체제의 통합, 포괄적인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적 접근과 같은 시각임을 알 수 있다.

그룹감독과 관련하여 「보험핵심원칙 23」³¹⁾은 감독당국이 자회사 및 그룹단위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자회사와 보험그룹(또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구조와 그룹 내 상호관계, 자본적정성, 재보험, 리스크 집중, 그룹 내부거래 및 리스크 노출규모, 내부통제 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감독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핵심원칙 16」에서 규정된 그룹 ORSA 요건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8) IAIS(2006), "Road map for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29) 2012년에 「보험핵심원칙 6」이 「보험핵심원칙 4」로 변경되었다.

30) 2012년에 「보험핵심원칙 10」이 「보험핵심원칙 8」로 변경되었다.

31) 2012년에 「보험핵심원칙 17」이 「보험핵심원칙 23」으로 변경되었다.

나. IAIS의 ORSA 주요 내용

「보험핵심원칙 16」은 여러 보험핵심원칙 중 ORSA 관련 내용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급여력 목적을 위한 ERM 체제, ORSA 관련 총론, 경제적 자본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 계속성 분석 등 「보험핵심원칙 16」에서 권고하고 있는 ORSA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ERM 체제

지급여력 목적을 위한 ERM 체제 구축 관련 내용은 「보험핵심원칙 16」의 기준 16.1~16.10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핵심원칙 16」에 따라 ERM 체제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식별·측정하여야 한다.³²⁾ 또한 ERM 체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특징³³⁾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정확한 정보, 관리 체계,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피드백 순환구조가 필요하게 된다.³⁴⁾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ERM 체제에 대해 감독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또는 그룹)가 ERM의 결과, ERM 정책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문서화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³⁵⁾ IAIS는 문서화 대상으로 ERM의 결과인 리스크 측정 방법, 리스크 측정의 전제조건, 리스크관리 방법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 등을 권고하고 있다(〈표 Ⅲ-1〉 참조).

한편, 보험회사는 ERM 실시의 일환으로 리스크 감내 능력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³⁶⁾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정량적·정성적 리스크에 대해 감내 능력 및 허용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사업전략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32) 기준 16.1.

33) 기준 16.9.

34) 기준 16.10.

35) 기준 16.2.

36) 기준 16.8.

〈표 Ⅲ-1〉 ERM 프로세스 문서화 내용

내용	기준(standard)
① 보험회사의 중요 리스크관리 방법	16,3
② 보험회사의 리스크 감내 능력, 감독목적 규제자본 요건, 경제적 자본과 리스크 감시 프로세스 방법 간의 관계	16,4
③ 자산 · 부채관리(ALM) 활동 내용, 상품개발, 가격설정 기능, 운용관리와 ALM의 관계	16,5
④ 보험회사 투자활동 내용, 규제상 투자요건 준수 방침,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절차의 투명성 여부	16,6
⑤ 보험인수 리스크 관련 방침	16,5

자료: IAIS(2012), "Insurance Core Principles, Standards, Guidance And Assessment Methodology 1 October 2011 as amended 12 October 2012".

2) ORSA 총론, 경제적 자본, 및 계속성 분석

「보험핵심원칙 16」의 ORSA 구축 관련 기준 및 가이드너스는 총론, 경제적 자본 및 규제 자본, 계속성 분석 등으로 구분된다(〈표 Ⅲ-2〉 참조).

〈표 Ⅲ-2〉 IAIS의 ORSA 관련 규정

ORSA 관련 규정	기준 (standard)	가이드너스 (guidance)
총론	16.11	16.11.1
	16.12	16.12.1
	16.13	16.13.1~16.13.6
경제적 자본 및 요구자본	16.14	16.14.1~16.14.19
계속성 분석	16.15	16.15.1~16.15.13

자료: IAIS(2012), "Insurance Core Principles, Standards, Guidance And Assessment Methodology 1 October 2011 as amended 12 October 2012".

가) ORSA 총론³⁷⁾

IAIS는 ORSA 총론 첫머리에서 ORSA의 목적은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및 장래 지급여력 수준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ORSA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⁸⁾ 이는 보험회사 스스로 ORSA를 실행하여야 하지만 감독당국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AIS는 보험회사가 지니는 리스크의 특성·규모·복잡성이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한 ORSA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³⁹⁾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규모·복잡성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⁴⁰⁾ 즉 ORSA 프로세스는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를 설계 및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IAIS는 ORSA 실시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게 부과하며, ORSA 실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체 감시와 감독당국의 검증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⁴¹⁾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는 보험회사마다 서로 다르며, 리스크 구조는 보험회사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 마다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IAIS는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의 범주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으며,⁴²⁾ 리스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ORSA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⁴³⁾

한편 이와 같은 요구는 보험그룹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 보험그룹 역시 직면

37) 기준 16.11 및 가이드스 16.11.1, 기준 16.12 및 가이드스 16.12.1, 기준 16.3 및 가이드스 16.13.1~16.13.6.

38) 기준 16.11.

39) 가이드스 16.11.1.

40) 기준 16.12.

41) 가이드스 16.12.1.

42) 기준 16.13.

43) 가이드스 16.13.1.

하는 모든 리스크의 특성 · 규모 · 복잡성을 반영하여 ORSA를 실행하여야 한다.⁴⁴⁾ IAIS는 그룹 분리, 소유구조 변화, 자본변동 가능성, 자산이전 가능성, 자본이중 계상,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그룹 통합성(integrity) 약화 등을 그룹리스크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⁴⁵⁾

나) 경제적 자본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⁴⁶⁾

IAIS가 「보험핵심원칙 16」에서 권고하는 ORSA 관련 경제적 자본과 감독목적 요구자본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스는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는 ORSA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하에 경제적 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며, 감독목적의 요구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IAIS는 이에 대한 입증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보험회사는 ORSA의 일환으로 리스크 감내 능력과 사업계획에 적합하며 동시에 감독기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무자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계획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재무자원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 리스크관리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는 경제적 자본을 산정하고 감독목적 요구자본 보유를 증명하며 재무자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는 리스크 간 상관관계, 리스크 감내 능력 설정, 리스크 보유 · 전가 등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의 관계 분석에 최적화된 경제적 자본을 산정하여야 한다.⁴⁷⁾

세 번째 보험회사는 경제적 자본의 적정성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의 요건 충족 관점에서 가용자본의 질과 양을 평가하여야 한다.⁴⁸⁾ 이때 보험회사는 리스크의

44) 가이드스 16.13.3~16.13.4.

45) 가이드스 16.13.3 및 가이드스 16.13.5.

46) 기준 16.14 및 가이드스 16.14.1~16.14.9.

47) 가이드스 16.14.3.

48) 가이드스 16.14.4~16.14.5.

특성·규모·복잡성을 반영하는 비례성 원칙, 장기 경영전략 및 신규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계속성 원칙, 자본의 손실흡수 능력과 자본 확충 유발 가능성⁴⁹⁾ 등을 고려하게 된다.⁵⁰⁾

경제적 자본 산정과 감독목적 요구자본 보유 증명은 그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⁵¹⁾ 보험그룹은 그룹차원에서 리스크 감내 능력과 사업계획에 필요한 재무자원 수준을 결정하고 감독목적 요구자본이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리스크관리에 근거하여 보험그룹은 경제적 자본·감독목적 요구자본·재무자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경제적 자본을 자회사와 그룹 차원에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IAIS는 보험그룹이 ORSA 실행의 일환으로 재무자원 수준을 평가할 때 다각적인 자본조달(multiple gearing),⁵²⁾ 그룹 내 자본창출 또는 상호 조달(intra-group creation of capital and reciprocal financing),⁵³⁾ 양질의 자본 차입(leverage),⁵⁴⁾ 그룹 내 자본대체 가능성(fungibility), 자산이전 가능성(free transferability)⁵⁵⁾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9) 예를 들어, 미래 수익을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한 경우 기대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 확충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50) 가이던스 16.14.6.

51) 가이던스 16.14.9.

52) 다각적인 자본조달은 보험회사가 자회사, 모회사, 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게 규제 자본으로 분류되는 투자를 연속적으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다.

53) 그룹 내 자본창출은 계열사 상호 간 자금 조달 시 발생할 수 있다. 상호간 자금 조달은 직간접적으로 규제 자본 성격의 증권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출을 해 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54) 자본차입은 모회사가 규제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향후 수익금만 규제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을 자회사에 발행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자본차입 정도에 따라 모회사의 채무 이행으로 인해 자회사에 과도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55) 그룹 재무건전성 평가 시, 한 보험계열사의 요구자본(Capital Requirements)을 초과한 잉여자본이 항상 다른 보험계열사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유로운 자산 및 자본의 이전은 운영상 또는 법적 규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예로는 일부 지역의 상호교환 규제, 계약자에게 배당할 재원인 유배당계정의 초과수익,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일부 투자자의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그룹의 초과 자본은 하위 계열사의 손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악화 시에는 이러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항상 보장될 수는 없다.

다) 계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⁵⁶⁾

보험회사의 계속성 분석은 ORSA 실행의 목적 중 하나이다. 보험회사는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관리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중장기 사업전략에 나타나는 질적·양적 리스크를 반영하여 장래 재무상황을 예측하여야 하며 장래 지급여력 니즈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⁵⁷⁾

이때 장기간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자본관리 계획과 미래 자본예측이다. 보험회사가 위기상황 전후의 자본 및 현금 흐름에 대해 전망하여야 장래 경제적 자본 및 장래 감독목적 요구자본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계속성 분석의 전제조건인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IAIS는 통상 3~5년의 사업계획 기간을 권고하고 있다.

신규 사업계획, 미래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특히 보증과 옵션의 경우), 미래 사업비 수준 등은 계속성 분석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⁵⁸⁾ 또한 이들은 정치 및 경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외부요인 변화 역시 계속성 분석의 관심 대상이 된다.

보험회사는 계속성 분석이 분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응이 되며 체계화되기 위하여 위기상황 대응계획과 관련 절차를 수립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장래 감독목적 요구자본 산정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며, 최고경영진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즉, 보험회사는 계속성 분석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예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며, 미래 사업 및 리스크관리 전략 변화가 경제적 자본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⁵⁹⁾

계속성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또 다른 전제조건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경제적 자본을 측정할

56) 기준 16.15 및 가이드نس 16.15.1~16.15.3.

57) 가이드نس 16.15.2.

58) 가이드نس 16.15.6.

59) 가이드نس 16.15.5.

수 있는 내부모형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해진다.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전략 변경에 따른 리스크 구조 변화를 내부모형에 반영하여 경제적 자본을 평가한다.⁶⁰⁾

그룹 ORSA의 경우에도 계속성 분석이 적용된다. 다만 그룹이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리스크 대상은 그룹의 지속적 생존 능력, 그룹 구조의 변화 가능성, 계열사들의 지속경영 능력 등이다. 특히 그룹차원에서는 현금흐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룹 ORSA는 그룹 내 충분한 잉여금 창출⁶¹⁾ 및 자본대체 가능성 여부와 그에 따른 경영 조치⁶²⁾ 등을 고려하며, 자회사 간 현금흐름⁶³⁾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⁶⁴⁾ 자회사 입장의 ORSA는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 그룹리스크의 전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그룹 역시 계속성 분석의 일환으로 사업 실패 시나리오를 예상하기 위하여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고려하게 된다.⁶⁵⁾

2. EU

가. ORSA 관련 추진경과

솔벤시 2는 기본적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9월까지 8차례의 솔벤시 2 프로젝트 작업반 회의에서 작성한 Sharma⁶⁶⁾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Sharma 보고

60) 가이던스 16.15.8.

61) 장기펀드 잉여금, 자회사 배당금.

62) 그룹 내 자원 이동, 그룹 내 기타 거래, 그룹 구조조정.

63) 이자지급, 대출자금, 신규사업 자금조달, 기타 부채 상환.

64) 가이던스 16.15.11.

65) 가이던스 16.15.13.

66) Sharma, Paul(2002),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 Report of London working group on Solvency II", conference of insurance supervisory services

서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지급여력 문제를 발생시킨 리스크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Sharma 보고서는 “리스크관리 실패가 지급여력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과 “부적절한 의사결정, 내부 통제 및 그룹 차원경영전략 등이 지급여력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대다수 과거 사례에서 보여준 교훈으로 제시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진의 역량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이들의 과도한 리스크 선호, 청렴성 및 독립성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점과 “보험회사에 적합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적절하게 내부 통제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사례 교훈으로 반영한다.⁶⁷⁾

주목되어야 할 사항은 이와 같은 과거 사례 교훈으로 솔벤시 2에서 정성적 감독의 필요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Sharma 보고서는 감독당국이 리스크 관리의 정성적 요인, 리스크관리의 적합성, 적절한 지배구조 등과 같은 내부 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솔벤시 2는 이를 감안하여 정성적 감독인 ORSA를 강조하고 있다.⁶⁸⁾

2008년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이하 EIOPA)의 전신인 유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the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 이하 CEIOPS)는 ORSA에 관한 “이슈보고서”⁶⁹⁾에서 정성적 감독을 강조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ORSA의 기본원칙(〈표 Ⅲ-3〉 참조)과 ORSA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 전체 지급여력, 계속적 원칙 준수, 리스크 구조에 대한 평가, ORSA 실행 빈도, ORSA 결과 감독보고 등에 관한 요건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paris.

67) Sharma(2002), p. 38.

68) Sharma 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의 수준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배구조 문화 및 질을 평가하는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harma(2002), p. 73).

69) CEIOPS(2008),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 Issues Paper, CEIOPS-IGSRR-09/08.

〈표 Ⅲ-3〉 EU 솔벤시 2의 ORSA 원칙

구분	주요 내용
원칙 1	ORSA는 보험회사의 책임이고,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원칙 2	ORSA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 위험을 포괄하여야 한다.
원칙 3	ORSA는 적절한 측정 방법과 평가 절차에 기반하여야 하며, 관리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체제와 통합되어야 한다.
원칙 4	ORSA는 미래지향적이고, 보험회사의 사업계획 및 장래 예상을 감안하여야 한다.
원칙 5	ORSA 프로세스와 결과는 입증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자료: CEIOPS(2008),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 Issues Paper, CEIOPS-IGSRR-09/08, p. 1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EP)는 CEIOPS의 “이슈보고서”에서 제시된 ORSA 원칙과 요건을 토대로 마련한 「솔벤시 2 지침」을 2009년에 채택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ORSA는 리스크관리 감독 수단의 하나로서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이면서 리스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하는 프로세스이다.⁷⁰⁾⁷¹⁾ 즉, 솔벤시 2의 ORSA는 “보험회사가 리스크 구조⁷²⁾, 사업전략 및 리스크 감내 능력 등을 근거로 하여 장·단기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전체 리스크 양을 산출하며, 이에 대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고있는지를 감독당국이 확인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EIOPA는 「솔벤시 2 지침」에 근거하여 ORSA 가이드라인과 미래지향적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였다.⁷³⁾ EIOPA는 2012년 7월에

70) CEIOPS(2009b)는 「솔벤시 2 지침」이 ORSA를 포함한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71) CEIOPS(2009b), “Lessons learned from the crisis(Solvency II and beyond”, CEIOPS-SEC-107/08, p. 15.

72) 감독목적 요구자본(SCR)에서 감안하지 않은 리스크도 중요하다고 인식된다면 평가대상 리스크에 포함되어야 한다.

73) EIOPA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으나, ‘이행 또는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ORSA 가이드라인(안)」을 공표하였고, 이를 통해 ORSA 정책, ORSA 문서화, ORSA 내부보고, ORSA 특징, 그룹 ORSA 특징 등을 제시하였다.⁷⁴⁾ 또한 EIOPA는 2013년 9월에 「미래지향적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안)」⁷⁵⁾을 공표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리스크 평가 및 실행에 관한 주요 내용, 보고준수 및 규칙, 감사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나. EU 솔벤시 2의 ORSA 주요 내용

EU 감독당국은 현재까지 「솔벤시 2 지침」, 「ORSA 기준(안)」 및 「ORSA 가이드라인(안)」을 통하여 ORSA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솔벤시 2 기준(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솔벤시 2의 ORSA 관련 요건들은 「솔벤시 2 지침」과 「ORSA 가이드라인(안)」에 한정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 항에서는 「솔벤시 2 지침」과 「ORSA 가이드라인(안)」을 중심으로 EU 솔벤시 2의 ORSA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솔벤시 2 지침」과 ORSA

EU 솔벤시 2는 3개 층(Pillar)으로 구성된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솔벤시 2의 1층(Pillar I)⁷⁶⁾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규모와 자본요건 등 정량적 감독을 의미한다. 솔벤시 2의 2층(Pillar II)⁷⁷⁾은 리스크관리, 자본관리 및 지

이 적용된다. 따라서 EU 회원국 감독당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권고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강유덕 외 5인(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 변화」, 연구보고서 12-29, p. 95~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74) EIOPA(2012),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 11/008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75) EIOPA(2013), "EIOPA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 13/009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forward looking assessment of own risks(based on the ORSA principles)", EIOPA/13/414.

76) 정량적 요건: 자산·부채평가, 책임준비금, 자기자본, SCR·MCR, 그룹 지급여력.

배구조 시스템 구축 등 정성적 감독을 의미한다. 솔벤시 2의 3층(Pillar Ⅲ)은 감독기관 및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ORSA는 2층(Pillar II)에 대한 분석과 관련이 있지만 리스크·자본 평가 결과와 결과 보고·공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 3층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U는 「솔벤시 2 지침」 45조⁷⁸⁾ 및 246조⁷⁹⁾에서 “모든 보험회사(또는 재보험회사)는 ORSA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솔벤시 2 지침」 45조는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첫째, 지급여력 수준을 결정하며 둘째, 감독목적 요구자본과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셋째, 리스크를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ORSA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 「ORSA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EU는 「솔벤시 2 지침」에서 보험회사의 ORSA 실시를 강제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ORSA 실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ORSA는 비례성 원칙, 지급여력 준수 평가, 미래지향적 전망, 의사결정(리스크관리·자본관리) 활용, 하향식 접근법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이러한 특징을 살펴본다.

가) 비례성 원칙

EIOPA는 실행 방법보다는 달성할 목적에 중점을 둬 따라 ORSA 프로세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비례성 원칙 적용을 ORSA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이 모든 보험회사에게 적합하며 만족할만한 ORSA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EIOPA는 이 한계를 고려하여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77) 정성적 요건: 경영적정성 지배구조 시스템, ORSA, 외부감사, 검증활동.

78) ORSA 관련 내용.

79) 지배구조 시스템 감독 관련 내용.

보험회사가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에 적합한 ORSA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며, 리스크 구조와 지급여력에 대한 견해와 리스크 대책을 ORSA 프로세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나) 지급여력 니즈 평가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 준수

ORSA 실행의 핵심 목적은 보험회사가 회사 전체에 필요한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감독목적 요구자본 및 책임준비금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EIOPA(2012)는 이 핵심목적에 보험회사는 정량적 리스크 관점 또는 정성적 리스크 관점을 적용하여 회사 전체에 필요한 지급여력을 전망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안)으로 제시하였다. EIOPA는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EIOPA는 보험회사는 감독목적 요구자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⁸⁰⁾

- 리스크 구조 및 스트레스 상황의 변화 가능성
- 사업계획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가능한 가용자본의 규모와 질
- 가용자본의 질 · 양과 자본의 상환, 만기 등에 따른 자본구조상 변화

또한 EIOPA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ORSA의 일환으로 책임준비금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보험계리 부문으로부터 책임준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한 리스크 중심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⁸¹⁾

한편, 보험회사는 리스크 구조와 감독목적 요구자본 산정 가정 간에 발생한 괴리를 평가하여야 한다.⁸²⁾ 감독당국은 이 평가를 토대로 감독목적 요구자본

80) 가이드라인 10.

81) 가이드라인 11.

82) 가이드라인 12.

관련 가정들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표준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리스크가 표준모델의 가정에 비해 과도 또는 과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모수(parameter)를 사용하는 부분적 내부모델을 구축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내부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괴리는 ORSA 프로세스에 반영함으로써 해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 미래지향적 전망(forward-looking perspective)

EIOPA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ORSA 일환으로 계속 기업을 상정하여 미래시점에서의 존속 가능성과 이때의 필요자본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⁸³⁾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장래 몇 년의 기간을 전망 대상으로 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리스크 식별·지급여력 평가·가용자본 평가에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사업 복잡성·장래 사업계획·장래 대차대조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급여력과 자기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환경, 보험시장 변동 등 외부 요인들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미래 시점에 직면할 리스크와 미래 외부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 대상 범주와 실시 빈도가 보험회사의 사업과 리스크 구조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여야 한다.

라) 경영전략 의사결정에 활용

ORSA의 효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⁸⁴⁾은 감독목적 요구자본과 장래 지급여력 니즈를 평가하는데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83) 가이드라인 9.

84) AMSB(Administrative, Management or Supervisory Body, 이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즉,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ORSA 결과를 경영전략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EIOAP는 이를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EIOPA는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보험회사는 미래 리스크 상황 파악 및 그에 따른 자기자본 영향 분석을 자본관리, 경영계획, 상품개발, 상품설계 등 경영전략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ORSA 프로세스를 의사결정 체제와 연계하여야 하며, 하향식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ORSA 프로세스는 보험회사 내 하부조직이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 및 검증하여 그 결과를 상부조직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조직이 ORSA의 방향을 결정하고 검증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ORSA 프로세스 설계, ORSA 정책 승인, ORSA 평가방향 조정 등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내외 독립적인 감사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여야 한다.⁸⁵⁾

마) 보험그룹 ORSA

EIOPA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보험그룹은 그룹 구조 및 그룹리스크 형태의 특징을 반영하는 그룹 ORSA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그룹 내 자회사는 그룹 ORSA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룹 ORSA는 자회사가 EEA(유럽경제지역) 역내 또는 역외인지, 비보험 또는 보험회사인지, 감독 대상 또는 비감독 대상 보험회사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⁸⁶⁾ 그리고 그룹 ORSA는 역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그룹 내 가용자본의 이전가능성과 대체가능성에 유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⁸⁷⁾

따라서 그룹이 단일 ORSA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대상 자회사 결정 방법, 자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ORSA 평가 프로세스 및 결과 승인에 어떻게 관

85) 가이드라인 2.

86) 가이드라인 15.

87) 가이드라인 21.

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⁸⁸⁾

그룹 전체 지급여력 평가와 관련하여 그룹 ORSA는 그룹 내 모든 고유 리스크, 상관관계, 그룹리스크 형태의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측정·감시·관리·보고하여야 한다. 그룹은 분산효과를 포함하여 그룹 전체 지급여력 니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⁸⁹⁾ 특히 그룹 ORSA는 미래지향적 시각을 반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⁹⁰⁾

-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그룹 내 가용자본의 원천을 파악
- 가용자본의 가용성·이전가능성·대체가능성을 평가
- 그룹 내 가용자본 이전 계획과 그 결과를 서술
- 그룹 레벨에서 수립된 개별 전략과 연계
- 그룹이 노출되는 고유 리스크

바) ORSA 문서화

EIOPA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ORSA 프로세스와 더불어 ORSA 정책, ORSA의 활동 기록, 내부 ORSA 보고서, 감독 당국 ORSA 보고서 등과 같은 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표 Ⅲ-4〉 참조).

88) 가이드라인 19.

89) 가이드라인 17.

90) 가이드라인 18.

〈표 Ⅲ-4〉 ORSA 문서화 내용

문서화 항목	내용
ORSA 정책	• ORSA 실시 프로세스 및 순서(미래지향적 전망 반영) • 리스크 구조 · 허용도와 지급여력 간 관련성 • ORSA 실시 시기, 빈도(매년 실시) •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분석,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및 빈도 • 데이터 품질에 관한 요건
ORSA 활동	• ORSA 실시 상황과 결과를 검증하여 문서화 • 문서화 수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ORSA 내부 보고서	• 내부보고서는 최고경영층에서 승인된 후 관련 구성원에게 공개
ORSA 감독당국 보고서	• 내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감독당국 보고서 작성

자료: EIOPA(2012),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 11/008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EIOPA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ORSA 내부보고서 및 ORSA 감독당국 보고서에 〈표 Ⅲ-5〉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 Ⅲ-5〉 ORSA 프로세스 및 기록 · 문서화(예시)

1. 사업전략, 리스크 전략	5. 지급여력 평가
2. 리스크 선호 및 리스크 감내능력	필요자본 평가
3. 리스크관리 태도	자본/책임준비금 요건 준수 평가
보험리스크	계획과 실적 비교(갭, 변동분석)
자산리스크	정성적 리스크 평가
신용리스크	6. 장래예측
⋮	사업계획
4. ORSA 프로세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ORSA 실행순서 및 실행회수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의 영향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자본계획 및 유동성 계획
비즈니스/의사결정 반영	7. 검증, 재검토 활동
그룹 ORSA	검증, 활용 검증
5. 데이터 품질관리	내부 · 외부 감사

자료: EIOPA(2012),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 11/008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그런데 EIOPA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요구하는 ORSA와 관련해 문서화하여야 하는 보고서가 보험회사에 의해 새롭게 작성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기존 문서가 ORSA 프로세스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3. 미국

가. ORSA 관련 추진 경과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조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NAIC는 그 과정에서 IAIS의 ORSA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글로벌 보험회사와 보험그룹에 대한 리스크 중심 감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2008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 모두 의무적으로 FSAP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⁹¹⁾⁹²⁾ (〈표 III-6〉 참조).

91) Milliman(2013), "ORSA: An international requirement".

92) 황정욱(2009), 「국제사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 방지 대책 및 과제」, 『Risk Review』, 2009년 하반기, pp. 91~107, 금융감독원.

〈표 III-6〉 미국 NAIC의 ORSA 추진 목적

추진 목적	주요 내용
IMF의 FSAP를 이행	- 모든 국가는 감독시스템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 G20 회원국은 FSAP에 의무적으로 참여*
글로벌 보험회사 감독	- IAIS는 IMF가 FSAP를 위한 보험감독기준 개발 - 글로벌 보험회사는 IAIS ComFrame 및 솔벤시 2를 적용
재무건전성 감독 개선	- 리스크관리는 보험회사를 재무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운용 - 양적 분석은 재무상태 평가를 개선
리스크 중심 검사 지원	검사 빈도 및 검사 깊이에 대한 감독정책 결정
스트레스 대응능력 향상	보험회사의 대응 능력을 이해

주: * 2008년 11월 G20 재무장관 선언.

자료: Kris DeFraen(2011),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 in the U.S.", 2011 Casualty Actuarial Society Spring Meeting, pp. 7~8.

NAIC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를 강화하고자 「리스크관리 및 ORSA에 관한 모델법」(Risk Management and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Model Act, 이하 「ORSA 모델법」)을 2012년 9월에 채택하였다. 「ORSA 모델법」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평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ORSA 모델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2015년 1월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ORSA를 실행하고, 주(州)감독당국 또는 요청하는 기타 감독당국에게 ORSA 요약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감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⁹³⁾ 또는 신용평가기관이 요구할 때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NAIC는 「ORSA 모델법」과 더불어 「ORSA 가이드라인 매뉴얼」(ORSA Guidance Manual, 이하 「ORSA 매뉴얼」)을 검토하였다. NAIC는 2011년 11월에 「ORSA 매뉴얼(안)」을, 2012년 12월에 수렴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된 「ORSA 매뉴얼(안)」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NAIC는 2013년 3월에 최종 「ORSA 매뉴얼(안)」을 확정하였다.

93)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경영 리스크 수준을 문서화해 공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노출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관리 활동 내용 등을 사업보고서(예, 10-K, 10-Q)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포스코경영연구소(2011), "전사적 관점의 리스크관리의 이해", p. 2).

나. NAIC의 ORSA 주요 내용

NAIC는 ORSA 요건들을 「ORSA 모델법」 및 「ORSA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ORSA 모델법」 및 「ORSA 매뉴얼」을 중심으로 NAIC의 ORSA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ORSA 모델법」 주요 내용

NAIC의 「ORSA 모델법」은 기본적으로 보험그룹 및 대형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EU 솔벤시 2와 구별된다. NAIC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험그룹 및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NAIC는 2008년부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s, 이하 SMI)”⁹⁴⁾을 진행하였다. NAIC는 이 작업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보험그룹에게 ERM 관리를 요구하는 보험그룹 규제를 개정하였고,⁹⁵⁾ 2012년 9월에는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ORSA 모델법」을 제정하였다.

NAIC의 「ORSA 모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 또는 그룹이 주요 리스크를 식별·평가·감시·관리·보고하는 체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ORSA 모델법」 적용 대상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은 적어도 1년마다 감독기관에게 ORSA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회사의 연간 원수보험료⁹⁶⁾가 5억 달러 이하 또는 보험그룹의 연간 원수보험료⁹⁷⁾가 10억 달러 이하인 경우 「ORSA 모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RBC 규제 하에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인수보험의 종류, 보험회사 소유 구성 및 조직체제와 관련하여 연방감독당국 또는 국제감독

94) SMI는 자기자본규제, 지배구조·리스크관리, 그룹 기반 감독, 회계·재무 보고, 재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

95) Model #440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96) 연방농작물보험 및 연방홍수보험 출재보험료는 제외.

97) 연방농작물보험 및 연방홍수보험 출재보험료는 제외.

기구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은 「ORSA 모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ORSA 매뉴얼 주요 내용

「ORSA 매뉴얼」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의 ORSA 요약보고서에 대한 가이드선이다. NAIC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ORSA 매뉴얼」을 검토하였다. 「ORSA 매뉴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유형, 규모, 복잡성 등을 고려한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리스크를 정의하고 계량화하여 모든 보험회사의 ERM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ORSA 매뉴얼」은 리스크 및 자본을 보험그룹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목표 하에 NAIC는 「ORSA 매뉴얼」에서 보험회사의 ERM 체제, 보험회사 리스크 노출규모 평가, 보험그룹의 경제적 자본 및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평가로 구성되는 ORSA 요약보고서를 권고하고 있다.

가) 보험회사의 ERM 체제

NAIC의 「ORSA 매뉴얼」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의 ORSA 요약보고서에 ERM 체제 구축을 위해 리스크 중심의 문화 및 지배구조, 리스크 식별 및 우선순위 설정, 리스크 선호, 리스크 감내능력, 리스크 한도, 리스크관리 및 통제, 리스크 문서화 및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표 Ⅲ-7〉 참조).

〈표 Ⅲ-7〉 ERM 체제 추진 목적과 주요 내용

추진 목적	주요 내용
리스크 중심 문화 및 지배구조	•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에 대해 신뢰와 책임을 부여하는 리스크 문화 •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 식별 및 우선순위 설정	• 리스크 식별과 우선순위 결정은 조직의 핵심임 • 이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여야 함 • 리스크관리 기능은 그러한 절차가 적합하고 모든 조직 레벨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음
리스크 선호, 리스크 감내 수준, 리스크 한도	• 공식적인 리스크 선호 선언, 리스크 감내능력 및 리스크 한도 설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 요소임 • 리스크 선호 선언에 대해 이사회가 이해 및 승인함으로써 보험 회사의 리스크 전략은 완성됨
리스크관리 및 통제	• 리스크관리는 지속적인 ERM 활동 • 보험회사 조직 내 모든 레벨에서 운영
리스크 문서화 및 의사소통	• 리스크 문서화는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 • 의사소통은 리스크 감내와 관리에 대한 비공식적 의사결정에 기여함

나) 보험회사 리스크 노출규모 평가

NAIC가 권고하고 있는 ORSA 요약보고서는 정상적 상황 및 위기 상황 리스크 노출규모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의 특징·규모·복잡성을 고려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리스크 구조에 적합한 리스크 측정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리스크 노출규모를 평가하여야 한다.

첫째, 리스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주요 유형별로 리스크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사용된 리스크 평가 기법, 이에 대한 주요 가정, 역(逆) 시나리오에 근거한 평가 결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리스크 평가 기법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량적 리스크의 경우 보험회사는 정상 상황과 위기 상황 모두를 상정하여 리스크를 계량화하며, 특정 리스크가 현금흐름 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자본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중요하다. 이때 고려되는 자본 유형은 가용자본, 요구자본, 신용평가기관 평가 자본 등이다. 영향력 평가 기법으로는 단순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복잡한 통계적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NAIC는 「ORSA 매뉴얼」에서 정성적 리스크를 인식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방법을 별도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금융권의 경우를 볼 때 정성적 리스크는 리스크 발생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리스크 인과관계도(Causal Map) 도출, 핵심리스크지표(Key Risk Indicator) 선정 및 감시 등의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른 금융권의 경우를 볼 때 정성적 리스크는 리스크통제 자가진단(Risk and Control Self Assessment), 경영진 자가진단(Management Self Assessment), 민감도분석/시나리오 분석 또는 위기상황 분석, 유추접근법 등의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⁹⁸⁾

둘째, 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 방법을 모든 경영 형태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그룹차원에서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자회사 차원에서 실시된 결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추가 정보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보험회사는 리스크 감내 능력을 설정할 때 정량적 리스크 한도와 정성적 리스크 한도 역시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리스크 유형과 리스크 간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리스크 감내 능력과 리스크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리스크 구조는 보험회사별로 상이하므로 감독당국은 각 보험회사에 적용 가능한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당국은 동태적 리스크 평가 기법이 아닐 경우 리스크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동태적 리스크 평가 기법을 적용할 경우 감독당국은 경제적 시나리오 생성기(Economic Scenario Generator)에서 사용되는 특정

98) 정지훈(2007), 「전략 · 평판리스크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 『Risk Review』, 2007년 봄, pp. 93~117, 금융감독원.

모수를 제공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측정 Metric 수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보험그룹의 리스크 대비 자본 평가와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평가

NAIC가 권고하고 있는 ORSA 요약보고서는 보험그룹에 의한 리스크 자본⁹⁹⁾ 평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리스크 자본 평가는 보험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가용자본 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 자본 평가의 목적은 리스크 선호, 리스크의 특성·규모·복잡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리스크 자본과 가용자본을 비교하여 리스크에 따른 손실이 가용자본으로 흡수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보험그룹의 리스크 자본은 RBC 감독목적의 최소 자본량이 아닌 보험그룹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본 수준이 된다.

보험그룹의 리스크 자본 평가는 개별 보험회사와 달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동일 자본이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사용될 경우 그룹 내 이중 자금조달 제거
- 보험그룹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레버리지 수준
- 보험그룹의 분산효과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금의 활용을 포함하여 그룹 내 자본대체에 대한 제한
- 보험그룹의 집중도, 복잡성, 연관성이 “리스크 자본”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미시·거시적 요소에 따라 보험그룹의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한편, NAIC가 권고하고 있는 ORSA 요약보고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의

99)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자본 규모를 말하며, IAIS 「보험핵심원칙」의 경제적 자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래지향적 그룹 지급여력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리스크 선호를 고려한 다년간의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필요로 하는 재무자원이 확보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이 현재 또는 장래 리스크 자본을 하회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할 경우 자본확충 계획,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호주

가. ORSA 관련 추진 경과

호주 감독당국(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이하 APRA)의 재무건전성 감독 체제는 EU 솔벤시 2와 같은 맥락의 리스크 감독 중심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APRA는 1~2년의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리스크 중심 감독기준을 2013년 1월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APRA가 새로 도입한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는 3층 체제이다. 이는 솔벤시 2와 바젤 2(또는 바젤 3)의 감독체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APRA의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 중 1층은 감독기준에 따른 정량적 요구자본이다. 2층은 감독당국 점검(supervisory review process)으로 리스크관리, 자본관리, 자본 확충 조치 등을 포괄한다. 3층은 리스크 감안 자본적정성 감독체제를 확고히 해주는 외부 공시이다.

APRA는 감독당국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본적정성평가체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이하 ICAAP)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바젤 2의 ICAAP와 동일한 것이다.¹⁰⁰⁾ 이처럼 APRA가 보험권에 서 채택한 제도 명칭인 ORSA 대신에 은행권에 채택한 제도 명칭을 사용한 것은

100) APRA(2010b), "Review of capital standards for general insurers and life insurers", APRA Discussion Paper, p. 54.

금융권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호주 감독당국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APRA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회사 자본 프로젝트(Life and General Insurance Capital Project, 이하 LGICP)”를 2009년 5월에 착수하였다. LGICP는 감독기준에 대한 리스크 민감성 및 적합성 개선, 금융권역 간 감독기준 연계 강화, 국제적 기준 감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⁰¹⁾ 2010년 APRA는 이익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개정하였으며,¹⁰²⁾ 개정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10월 최종적인 자본기준(Capital Standards for General Insurers and Life Insurers)을 확정하였다.

APRA는 ICAAP 실행에 4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감독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 이하 보험회사)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ICAAP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APRA는 보험회사의 ICAAP를 감독 및 평가하며,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최소한 감독목적 요구자본(Prudential Capital Requirement, 이하 PCR) 요건 이상인 목표자본(Target Capital)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APRA는 보험회사의 자본이 PCR 수준을 하회할 경우 즉시 개입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이다.

ICAAP 실행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자본상황 감시와 리스크관리 정보에 크게 의존하여야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편 호주 ICAAP는 기능 및 명칭상 IAIS가 요구하는 선임계리사 재무상태보고서(Financial Condition Report, 이하 FCR)¹⁰³⁾와 비슷하지만 서술하는 내용에

101) APRA(2009), “Life and General Insurance Capital Project”, APRA Letter, p. 1.

102) APRA(2010c), “The revised Life and General Insurance Capital Project timetable and process”, APRA letter.

103) 선임계리사는 현재 보험회사 사업 개요, 보험회사의 최근 경험 및 수익성에 대한 평가, 보험부채 평가보고서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기존 보험부채 추정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자산 및 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투자전략 포함), 현재 자본적정성 및 장래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법에 대한 검토, 보험

서 차이점이 분명하다. APRA는 「실무가이드(Prudential Practice Guide)」에서 FCR과 ORSA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관리 측면에서 볼 때 ICAAP 보고서와 FCR의 통합이 적절하지만,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사회가 ICAAP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없을 경우 이들 보고서를 통합하게 되면 이사회 의사결정에 ICAAP를 활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ICAAP 보고서는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특별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APPR는 ICAAP 보고서가 별도 보고서일 것으로 기대한다.”¹⁰⁴⁾

APRA는 ICAAP 구축 및 감독당국 점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가이드(Prudential Practice Guide)¹⁰⁵⁾를 작성하였다. 실무가이드가 제공하는 정보는 「손해보험감독기준 GPS 110(자본적정성)」과 「생명보험감독기준 LPS 110(자본적정성)」에 근거하며, 실무가이드에서 언급되는 자본기준(Capital Standards)은 「손해보험감독기준 GPS 110」과 「생명보험감독기준 LPS 1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기준을 의미한다.

나. 호주 ICAAP 주요 내용

APRA가 제안하고 있는 ICAAP 요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¹⁰⁶⁾

료 가격결정에 대한 평가(보험료 적정성 포함), 재보험계약 적합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 리스크관리 체제 적합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위 평가 등을 서술한 재무상태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

104) APRA(2010a), “CPG 110 -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and Supervisory Review”, APRA Prudential Practice Guide, p. 12.

105) APRA(2013), “CPG 110 -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and Supervisory Review”, APRA Prudential Practice Guide.

106) Towers Watson(2013), “Risk management - the next step in the evolution of prudential regulation”, Insights, p. 20~22.

- 보험회사의 규모, 비즈니스 믹스 및 복잡성과 비례
- 이사회에서 승인한 리스크 선호와의 연계
-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노출되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 · 측정 · 감시 및 이에 대응하여 보유하는 자본과 관련된 정책 · 절차 · 시스템 · 통제 · 인적자원
- 적정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기간 동안 지속
- 감독목적 요구자본에 제외된 중요 리스크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
- 필요 시 추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
- 감독목적 자본 요건 및 목표 자본 요건의 준수 감시
- 스트레스 테스트
- ICAAP를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절차
- ICAAP가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절차
-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프로세스
- 이사회 승인
- ICAAP 요약보고서/ICAAP 정책문서(자본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 요약)
- ICAAP 연차보고서

이러한 APRA의 ICAAP 특징들은 IAIS 및 EU에서 제안하고 있는 ORSA의 특징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PRA의 ICAAP는 IAIS 및 EU의 ORSA처럼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목표 자본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APRA의 ICAAP는 보험회사의 비례성 원칙 준수, 리스크 선호 및 리스크관리의 질 감안,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APRA의 ICAAP 특징이 IAIS 및 EU의 ORSA 특징과 유사한 것은 감독당국이 국제적 정합성 측면을 감안하여 ICAAP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APRA의 ICAAP는 보험회사가 감독목적 요구자본을 초과하는 적정 자본 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별된다.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 항에서는 호주 ICAAP에 대한 실무가이드를 중심으로 ICAAP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사회 역할(board ownership)

자본기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보험회사가 감독목적 요구자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과 리스크 구조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ICAAP 구축, 최종 승인, 실행에 대한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ICAAP에서 사용되는 제가정 및 방법을 논의하며, ICAAP의 핵심 사항과 이를 선정한 이유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CAAP에서의 이러한 이사회 역할은 ICAAP가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전략적 경영계획을 감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리스크 선호 및 리스크관리 체제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보험회사가 리스크 선호를 선언하고, 적절한 리스크관리 체제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감독목적 요구자본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지 않았던 계량 및 비계량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본기준에 따른 적절한 자본을 항상 보유하여야 하므로 리스크 구조 또는 리스크 선호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자본 규모를 재검토하고 이를 ICAAP에 반영하여야 한다. ICAAP는 리스크 및 리스크 선호에 대해 평가하고 리스크 형태에 대응한 자본 규모와 자본 질에 대해 보증하게 된다. APRA는 ICAAP가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3) ICAAP 요건

가) 대상 리스크

ICAAP는 보험회사에 노출된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도록 요구한다. 즉, 보험회사는 자산리스크, 신용리스크, 자산부채 미스매칭리스크, 보험리스크, 자산집중

리스크, 보험집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비롯하여 운영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전염리스크, 기타리스크¹⁰⁷⁾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ICAAP는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상호관계의 변동성을 감안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리스크 범주 간 또는 범주 내 상호관계를 통해 잠재적 자본변동성의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나) 비례성(proportionality)

자본기준에 따르면 ICAAP는 보험회사의 규모, 비즈니스 믹스 및 복잡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사 환경에 맞추어 ICAAP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보험회사의 구조 및 복잡성을 반영하여 ICAAP의 복잡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미래지향적 자본관리

ICAAP는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해 리스크 구조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경영계획, 경영환경 및 기타 요인의 변화를 감안하는 등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경영계획 및 경영환경에서 예측되는 변화뿐만 아니라 예측되지 못하는 변화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ICAAP에 적용하여야 한다.

라) 그룹 ICAAP 고려사항

자본기준은 보험그룹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노출되는 그룹 관련 리스크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그룹 전체 자본에 대한 평가는 그룹리스크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염리스크, 거래상대방리스크, 평판리스크, 조직 종속 관련 리스크 등을 보험그룹 관련 리스크로 볼 수 있다. 보험그룹은 ICAAP를 실행

107) 개별 규제 금융회사에 적합한 리스크.

할 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자회사 간 자본대체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그룹은 그룹 내 모든 자회사는 자체적인 ICAAP가 자본기준 요건에 적합하고 이를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ICAAP 문서화

ICAAP는 리스크에 대응한 요구자본 평가, 목표자본 수준 설정, 자본 포지션 전망 및 감시, 자본 수준이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응 행동, 이사회에 대한 보고 등을 보험회사(그룹)에 요구하고 있다. 자본기준은 이러한 자본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ICAAP 요약보고서 및 ICAAP 연차보고서의 형태로 문서화할 것을 보험회사(그룹)에 요구하고 있다.

4) 목표 자본 수준 결정(target levels of capital)

목표 자본 수준 결정은 ICAAP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자본기준은 보험회사가 ICAAP의 일환으로 스스로 필요한 자본 규모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 자본 수준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결정할 때 상향식 접근법¹⁰⁸⁾과 하향식 접근법¹⁰⁹⁾ 모두를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목표 자본 수준을 결정하는데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리스크 선호, 감독목적 요구자본 요건, 필요 내부자본 평가, 이익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성, 배당정책, 적절한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추가적 자본 증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목표 자본 수준을 결정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APRA는 보험회사에 경제적 자본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복잡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본 모형과 스트레

108) 리스크별로 평가한 자본 니즈를 합산하는 방법.

109) 회사 전체 자본 포지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스 테스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본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양한 최소 자본¹¹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목표 자본 수준을 최저 감독한도를 초과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이 같은 최소 자본 요건 충족은 보험회사가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자본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5) 자본포지션 유지를 위한 트리거 수준 및 관련 행위

자본이 목표 수준 밑으로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감독 요건을 위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 트리거를 위반하지 않는 자본 포지션을 유지하여야 한다. 트리거는 조기경보지표로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들은 PCR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트리거를 단계별로 설정한다. 트리거는 대체적으로 자본잉여금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가 PCR을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의 즉시 시정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6) ICAAP 검증(review)

자본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적격자에 의해 ICAAP를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이들 감사를 행하는 ICAAP 감사자는 자본관리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내부 감사, 외부 감사, 리스크관리자 또는 외부 컨설턴트 등이 적격한 ICAAP 감사자이다. 중요한 것은 ICAAP 감사자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APRA는 필요한 기술과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부 인적 자원도 ICAAP 감사자로서 적합하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체 ICAAP 프로세스를 감사하되,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여러 단계에 걸쳐 진

110) 보통주 한도(common equity tier1 capital), tier1 capital, 및 total capital.

행한다. ICAAP 실무가이드는 3년의 기간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7) ICAAP 요약보고서와 ICAAP 연차보고서

자본기준은 보험회사에게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자본기준에 따라 문서화되는 ICAAP 프로세스는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서화할 대상은 ICAAP 요약보고서(ICAAP Summary Statement)와 ICAAP 연차보고서(ICAAP Report)이다. ICAAP 요약보고서는 특정 시점 보험회사의 자본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서술을 요약한 최상위 문서이다. 이는 ICAAP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사회와 감독당국의 이해에 기여한다.

ICAAP 요약보고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를 고려한 전략 및 사업계획, 리스크 선호 도출 과정 기술
- 보험그룹 내 자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ICAAP의 범위를 기술
- ICAAP의 내부통제 핵심에 대한 기술
- 리스크 평가와 자본 할당에 대한 접근, 프로세스, 이들 프로세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기술
- ICAAP 준수 승인, 점검, 모니터링에 대한 절차와 인적자원 기술
- ICAAP 실시 책임에 대한 절차와 인적자원 기술
- 자본 배분 기준과 접근에 대한 기술
- 사업 다변화 결정 과정에 대한 기술

ICAAP 연차보고서는 직전 연도의 요약보고서 프로세스의 실행 결과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최소 향후 3년 기간의 예상 자본 결과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APRA는 ICAAP 보고서가 매년 상당 부분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

지만 ICAAP 요약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PRA는 자본기준에 근거하여 ICAAP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할 사항을 밝히고 있다.

5. 일본

가. ORSA 관련 추진 경과

일본 감독당국은 2009년에 처음으로 ORSA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내부 문서인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¹¹¹⁾에 반영하였다. 2009년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 따르면 보험감독상 평가항목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은 리스크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2009년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내 리스크관리에 속하는 ERM, 스트레스 테스트,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은 ORSA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일본 감독당국은 2011년에 ERM 검사 매뉴얼을 신설하였다. 보험업법과 함께 감독지침의 실행을 규정하는 매뉴얼에 해당하는 ERM에 관한 「보험검사 매뉴얼」¹¹²⁾은 보험회사 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하여야 하는 경영진에 의한 ERM 정비 및 확립 상황과 관리자에 의한 ERM 정비 및 확립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경영진에 의한 ERM 정비 및 확립 상황과 관련해서는 ERM 정책 수립, ERM

111)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 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회사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 검사 및 업무개선 계획 제출 요구·업무 정지 명령 등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2) 「보험검사 매뉴얼」은 감독당국이 보험회사를 검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을 말한다. 보험검사 매뉴얼 중 “전사적 리스크관리 확인용 체크리스트”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ERM을 검증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을 말한다.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검사 매뉴얼」에 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회사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 검사 및 업무개선 계획 제출 요구·업무 정지 명령 등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내부 규정 및 조직 체제 정비 등이 보험회사 검사 시 감독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관리자에 의한 ERM 정비 및 확립 상황과 관련해서는 ERM 정책 수립, ERM 관련 내부 규정 및 조직 체제 정비 등이 감독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감독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ORSA와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다.

이렇듯 일본은 ORSA와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내부 문서인 감독지침 및 매뉴얼에 기술하고 있지만, 법규 및 감독지침·매뉴얼 어디에서도 ORSA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일본 감독당국은 2012년에 IMF 및 WB로부터 ORS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ORSA 관련 감독정책 포지션을 취할 것을 권고 받았다.¹¹³⁾

이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감독당국은 2014년 2월에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및 「보험감사 매뉴얼」에 명시적으로 ORSA를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먼저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을 재무건전성 관련 보험감독 평가항목인 “리스크관리”를 ERM 보험감독 평가항목으로 변경한 후 그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¹¹⁴⁾ 즉, 일본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평가항목이었던 “리스크관리”와 업무적절성 관련 보험감독 평가항목이었던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리스크관리·경영지속적 체제(BCM)”를 ERM 관련 보험감독 평가항목으로 재배치한 후 리스크 식별 및 리스크 구조, 리스크 측정, 리스크관리 정책, ORSA, 그룹 기반 ERM, 보고 등을 ERM 보험감독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감독당국은 IAIS(2011)의 「보험핵심원칙 16」을 수용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처럼 IAIS(2011)의 「보험핵심원칙 16」을 수용하면서,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의 ERM 보험감독평가항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험감사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감독당

113) IMF(2012), “Japan: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Update”, IMF Country Report No. 12/210, p. 92.

114) 植村信保(2014), “保険会社ERMの現状と金融行政の動向”, 日本保険学会・関東部会, s. 19.

국은 “ERM 확인검사용 체크리스트”에서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을 경영진에 의한 ERM 정비 및 확립에 대한 검사 시 검사자가 유의할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일본 감독당국의 노력은 감독당국이 그동안 실시한 “ERM 실태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 제고”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감독당국은 2005년 9월에 공표한 「보험회사 감독 정책」에서 “리스크관리 제고”를 감독중점 분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본 감독당국은 리스크관리 실태를 검증할 목적으로 주요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전사적 리스크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 감독당국은 이 실태 조사결과를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및 「보험검사 매뉴얼」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일본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중 ORSA 관련 주요 내용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은 미래에 걸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 전략 및 리스크 특성 등에 따라 보험리스크·자산리스크는 물론 운영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은 또한 거대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로 모든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전체에서 통제하는 ERM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에서 권고하고 있는 ERM 표준 체제가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제고에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RM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일본 감독당국은 ERM 관련 보험감독 평가항목에 리스크 측정, 리스크관리 정책, ORSA, 그룹 기반 ERM, 보고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런데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업법 등의 법령이 아닌 내부 문서를 통해 ERM과 ORSA를 명시적으로 보험회사에 권고하는 감독정책 포지션을 채택하고 있다. 이 포지션으로 인해 일본 감독당국은 평가 시 감안하여야 할 사항 및 검사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중심으로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 ERM과 ORSA를 기술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과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은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 항에서는 일본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서 기술하고 있는 ORSA 의의, ORSA 평가 시 착안점, 경영계획 및 지급여력 평가 관련 착안점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¹¹⁵⁾

1) ORSA 의의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 따르면 ORSA는 보험회사가 경영전략 및 리스크 특성 등에 따라 스스로 리스크관리의 적절성과 현재 및 장래에 걸치는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¹¹⁶⁾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이 평가 시 미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변화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관련성이 심각한 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한다.¹¹⁷⁾

이 같은 ORSA에 대한 일본 감독당국의 시각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ORSA 의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15) ORSA 외 ERM 보험감독 평가항목들에 대해서는 日本 金融庁(2014)의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을 참조하기 바란다.

116)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Ⅱ-3-5-1.

117)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Ⅱ-3-5-1.

2) ORSA 평가 시 착안점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 따르면 일본 감독당국은 앞서 서술한 의의를 감안하여 ORSA에 대한 감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¹¹⁸⁾

- 보험회사가 미래 경제 상황 및 다른 외부 요인의 변화를 포함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관련성이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자본의 질과 적정성을 평가하는가?
- 보험회사가 리스크 요인과 리스크의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 보험회사가 리스크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즉시 재평가하는가?
- 보험회사가 중장기 사업 전략(예, 3~5년) 특히 신규 사업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ORSA를 실시하는가?
- 보험회사가 필요한 경제적 자본과 지급여력 규제에 근거한 자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ORSA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리스크와 자본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는가?
- 보험회사 경영진이 필요한 경제적 자본과 지급여력 규제에 근거한 자본요구 사항과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는가?
- 보험회사는 ORSA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 계획 등을 적절하게 문서화하는가?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리스크 식별 및 리스크 구조, 리스크 측정, 리스크 관리 정책, 리스크 및 지급여력 자체 평가 결과 등을 적절하게 문서화하는가?
- 보험회사가 ORSA 효과에 대해 내부(예,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등) 또는 외부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는가?
- 내부감사부서는 ERM 및 ORSA의 효과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제언을 하는가?

118)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II-3-5-2.

이 같은 ORSA에 대한 감독평가 착안점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ORSA 요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안점은 검사자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는 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등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경영계획 및 지급여력 평가관련 착안점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에 따르면 일본 감독당국은 앞서 서술한 의의를 감안하여 경영계획 및 지급여력 평가에 대한 감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¹¹⁹⁾

-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규제에 근거한 자본 요건을 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간보다 긴 기간(예, 3~5년)동안 자신의 리스크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지급여력을 분석하는가?
- 보험회사가 경제상황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가능한 사건 등 외부 요인의 변화를 전제로 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고려하여 미래 재무 예측을 실시함과 동시에 미래에 필요한 경제적 자본과 지급여력 규제에 근거한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하는가? 이 때 보험회사가 신규 사업 계획, 최저 보증 및 옵션을 포함한 상품 설계와 보험료 결정, 상품 판매 전망을 고려한 미래 재무 예측과 향후 필요 경제적 자본과 지급여력 규제에 근거한 자본 요구 사항의 충족성을 분석하는가?

이 같은 경영계획 및 지급여력 평가에 대한 감독평가 착안점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장래 지급여력 관련 요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안점은 검사자 관점에

119)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Ⅱ-3-5-3.

서 기술되어 있다는 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 등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우리나라

가. ORSA 추진경과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2013년에 ORSA를 도입한다는 감독정책방향을 수립하고, ORSA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2014년 1월 21일에 개최된 ORSA 작업반 회의에서 ORSA 가이드라인 시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¹²⁰⁾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정합성과 리스크관리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ORSA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 도입 배경으로 제시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는 유럽, 미국, 호주 등과 동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은 국제감독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유럽·미국·호주 등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을 이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ORS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 도입 배경으로 제시한 리스크관리 기능 제고 역시 유럽, 미국, 호주 등과 일치한다. ORSA는 양적 규제 제도인 지급여력 제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정량평가 결과 등의 미래지향적 요소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ORSA 기능을 통해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미국·호주 등은 ORSA를 리스크관리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20) 강수원(2014), “자체 리스크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ORSA 도입준비 작업반 회의자료, s. 3.

이 같은 ORSA 도입 배경 하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2014년 1월에 ORSA 도입 준비 작업반을 조직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며, 주요국 ORSA 내용 등을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동 작업반에서 2단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파일럿 테스트와 법제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¹²¹⁾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제시한 이 같은 ORSA 도입 방식은 ORSA 핵심요소인 내부모형을 구축하는데 장기간, 고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험회사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국내 ERM 현황과 ORSA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범운영 기간은 감독당국에 보험 회사들이 ORSA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ERM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사회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운영기간은 보험회사에 자사에 적합한 ORSA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ORSA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ORSA 도입 준비 작업반 회의에서 ORSA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체계를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ORSA 가이드라인을 총칙, 통제구조, 리스크 평가, 지급여력 자체 평가, 감시 및 보고 등의 체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시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ORSA 도입 준비 작업반은 2014년 3월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제안한 가이드라인과 IAIS, EU, 미국 및 호주의 ORSA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ORSA 가이드라인(안)”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 제안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제안과 동일한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가

121) 강수원(2014), 전제서, s. 9.

이드라인(안)은 <표 IV-1>에서 볼 수 있는 ORSA 요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ORSA 도입 준비 작업반이 제안한 이 가이드라인(안)은 IAIS, EU, 미국 및 호주의 ORSA 관련 규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ORSA 요건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제4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III-8> 우리나라 ORSA 가이드라인(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총칙	• ORSA 핵심원칙 : 비례성 원칙, 리스크관리와 현재 · 미래 지급여력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적용 대상, 경영 활용, 문서화 등
통제구조	• 이사회, 경영진, 리스크 전담조직, 내부감사 등의 역할
리스크 평가	• 평가대상리스크 :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 • 리스크 평가 : 리스크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 마련 등 • 위기상황분석 : 정기적 실시
지급 여력 평가	• 내부자본 : 리스크별 신뢰수준 · 기간 · 상관관계 등을 합리적 설정으로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 단 비계량 리스크는 정성평가하여 반영 • 지급여력 자체평가 : 내부자본과 가용자본을 비교하고, 결과 미흡 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 • 통합 내부자본 한도 : 중기 자본계획과 리스크 평가 및 통합 위기상황 분석 결과와 연계 • 평가 범위 : 리스크관리 체제, 현재 · 미래 지급여력 등을 평가 • 평가 주기 : 정기 평가 및 수시 평가 • 그룹 지급여력 : 그룹 지급여력 자체 평가를 실시
감시 및 보고	• 내부 보고 :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하는 절차를 구축 • 감독 보고 : 이사회 확인 후 감독당국에 ORSA 프로세스 및 결과를 서술한 ORSA 보고서를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2014),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가이드라인(안)”.

IV.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EU, 미국 및 호주 등에서 권고 또는 요구하고 있는 ORSA 요건들은 대부분 서로 일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IAIS가 요구하는 감독규정 이행을 통하여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EU, 미국 및 호주 등은 ORSA 관련 규정인 가이드라인 또는 가이드언스에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IAIS는 ORSA 실행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¹²²⁾, 정성적 평가, 미래지향적 평가, 정기적인 실행, 비례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EU, 미국 및 호주 역시 이들 사항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AIS와 EU에서 권고하고 있는 ORSA 요건과 미국 및 호주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ORSA 요건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각국의 ORSA 검토 방식 및 검토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IAIS, EU, 미국 및 호주의 ORSA 핵심 요건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ORSA 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는 IAIS의 「보험 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 등과 직접적인 비교 한계를 감안하여 ORSA 핵심 요건을 비교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22) 스트레스 테스트,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가. 정량적·정성적 평가

EU, 미국, 호주(이하 주요국)는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평가할 때 중요한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제도상의 한계는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리스크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때 해소될 수 있다. 주요국들은 ORSA의 요건으로 보험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리스크를 모두 식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운영리스크 등 정성적 리스크를 식별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의 특성·규모·복잡성과 사업계획을 감안하는 경제적 자본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전체 지급여력을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AIS는 ORSA의 핵심 임무로서 경제적 자본 산출과 감독목적 규제자본의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데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모두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AIS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자본은 리스크관리와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에서 예상되는 양적·질적 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결정되어진다. IAIS에서 요구하는 감독목적 규제자본은 현재 및 미래 재무상황 예측을 반영한 자본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함으로써 결정되어진다.

EU 역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지급여력 니즈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EU에서 요구하는 보험회사 전체의 지급여력 니즈는 보험회사가 ORSA의 일환으로 리스크 구조, 리스크 감내 능력, 장래 사업전략을 고려하여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얻어진다.

미국은 정상적 상황과 위기 상황의 리스크 노출규모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정성적 평가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리스크 특성에 따라 평가 기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리스크와 평판리스크 등은 정성적 방법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단순한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복잡한 확률분석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적 상황과 위기 상황을 반영한 리스크를 검증하고 이에 대비하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주는 자본에 대한 목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ORSA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스스로 필요한 자본 규모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자본 목표 수준을 설정할 때 감독목적 규제자본을 감안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본 목표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자본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본의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리스크별로 평가한 자본 니즈를 합산하는 상향식 접근법과 보험회사 전체의 자본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 검증을 하는 하향식 접근법 모두를 감안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구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보험회사 스스로가 자체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평가 시 현재 및 미래의 지급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하며, 정량화하기 어려운 리스크의 경우 정성적 평가 결과를 통합 내부자본¹²³⁾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⁴⁾

123) 보험회사가 경영상 직면하는 정량적·정성적 리스크 평가 결과, 위기 상황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자본규모를 의미한다. EU의 경제적 자본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24) 금융감독원(2014),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가이드라인(안)”.

〈표 IV-1〉 정량적 리스크 평가

구분	주요 내용
IAIS	• 리스크 감내수준과 사업계획 하에서 사업 영위에 필요한 전체 재무자원 결정 - 감독목적 요구자본 충족 입증 - 감독목적 요구자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본자원 질과 적정성 평가 - 자본확충 가능성 진단
EU	• 정량적 방법에 의한 전체 지급여력 규모 평가 -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 분석,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미국	•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 스트레스 테스트, 확률분석 포함 - 정상, 위기 상황에서의 결과 분석 - 가용자본, 요구자본에 대한 스트레스 영향
호주	• 정량적 방법에 의한 전체 지급여력 니즈 평가 - 기대 자본요건 산출 -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 분석,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한국	• 리스크 및 지급여력 자체 평가 시 현재 및 미래의 지급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

〈표 IV-2〉 정성적 리스크 평가

구분	주요 내용
IAIS	• 계속성 분석에서 정량적·정성적 요인들을 다루어야 함
EU	• 리스크에 대한 정성적 특징 서술 요구
미국	•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요구
호주	• 감독당국은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포함할 것을 기대
한국	• 중요 리스크에 대한 평가 시 비계량화 리스크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은 국제기구 등의 보고서¹²⁵⁾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능동적

125) 이러한 보고서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2012 seventh Edition”, 영국 금융청(UKFS)의 “Retail Conduct Risk Outlook 2012”, 캐나다 계리사회의 “Emerging Risks Survey April 2012”, 국제금융공사(IFC)의 “Emerging Risk Impacts of Key Environmental Trends in Emerging Asia” 등이 있다.

으로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포지션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본요건 준수 및 가정 차이 평가

한편 감독목적 규제자본 요건 준수와 관련된 사항은 EU와 나머지 IAIS, 미국, 호주 간에 차이가 있다. EU는 “보험회사의 자본요건 준수 입증”과 “리스크 구조와 감독목적 규제자본 산출 가정 간 차이점 평가”를 ORSA 요건으로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다. 반면 IAIS, 미국, 호주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감독목적 규제자본 요건 준수”와 “리스크 구조와 감독목적 규제자본 산출 가정 차이 평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EU는 사업지속 전제하에 보험회사에게 자본요건과 책임준비금 요건 준수 유지를 요구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EU 「솔벤시 2 지침」을 적용받는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구조와 스트레스 상황이 미래에 변화할 가능성, 사업계획 기간에 걸친 자기자본 구성의 변화, 자기자본의 질과 양 등을 반영하여 자본요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은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요건을 준수하며, 계리담당 부문으로부터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리스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한편 EU는 리스크 구조와 감독목적 규제자본 산출 가정 간 괴리 평가도 분명하게 권고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표준모형 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감독목적 규제자본을 산출할 때 리스크 구조와 감독목적 규제자본에서의 제가정 차이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이를 다음번 산출에 반영하게 된다.

〈표 IV-3〉 자본요건 준수 지속성 및 SCR 가정과의 차이 평가

구분	주요 내용
IAIS	• 자본 요건 준수 지속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 리스크 구조와 SCR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EU	• 자본요건 준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리스크 구조와 감독목적 규제자본 산출 가정 간 차이를 평가하여야 함 - 이러한 차이가 계량화될 경우 이를 정량화하여 반영하여야 함
미국	• 자본 요건 준수 지속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 리스크 구조와 SCR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호주	• 자본 요건 준수 지속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 리스크 구조와 SCR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한국	• 자본 요건 준수 지속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 리스크 구조와 SCR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2. 미래지향적 평가

IAIS, EU, 미국, 호주는 공통적으로 보험회사가 ORSA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IAIS는 보험회사가 현재 시점의 자본 니즈와 미래 재무상황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사업지속 능력과 이에 요구되는 재무자원을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자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사업 지속 전제하에 가정한 역(逆)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관리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는 중장기 사업전략의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고려한 미래 재무상황 예측 즉, 계속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 분석을 통해 시장과 경제 여건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으며,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실패를 유발시키는 시나리오를 인지할 수 있다.

EU는 경제적 자본 평가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밝히고 있다. 보험회사는 향후 몇 년 간의 대차대조표와 자본요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지급여력 규모를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는 미래지향적 평가를 통하여 지급여력 또는 가용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에게 미래 사업계획 수행이 가능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미국 역시 미래지향적인 정량평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최소 3년 동안 예상되는 자본 요건을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전략, 사업계획, 가용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APRA의 ORSA 실무가이드¹²⁶⁾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리스크 구조와 가용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사업계획, 영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ORSA 가이드라인(안)에 미래지향적 정량평가 시각을 일부 투영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현재 및 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을 뿐 경제적 자본¹²⁷⁾ 산출에 미래 사업계획을 반영하거나 지급여력 평가에 미래지향적 시각을 반영할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시각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이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ORSA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계량 및 비계량적인 요소 모두를 감안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사업계획에 따른 경제적 자본을 평가하는 경우 비계량적인 요소를 계량화시키는 능력을 제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그 동안 사업계획 수립 시 계량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여 경제적 자본을 산출한 후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만 반영하였으며, 또한 비계량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6) APRA(2013), "CPG 110-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and Supervisory Review", APRA Prudential Practice Guide.

127)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내부자본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내부자본은 "보험회사가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 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이다.

〈표 IV-4〉 미래지향적 정량적 평가

구분	주요 내용
IAIS	• 현재 자본 니즈와 미래 재무상황에 대한 구별 • 장래 사업지속 능력과 이에 요구되는 자원 분석 필요
EU	• 정량적 평가에 미래지향적 요소반영 • 보험회사의 중장기 대차대조표 및 자본요건에 대한 미래 전망 요구
미국	• 미래 사업계획 수행이 가능한 재무자원 입증
호주	• 최소 3년 동안 예상되는 상세한 자본 요건 • 미래 전략, 사업계획, 미래 가용자본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평가
한국	• 현재 및 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 평가 원칙 설정 • 경영전략 수립 시 향후 3년간 자본계획 수립 요구 • 내부자본 및 지급여력 평가에 미래지향적 시각 반영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3. 이사회역의 역할

ORSA가 준수하여야 할 소극적인 사항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 의사결정의 필요한 과정으로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는 ORSA와 관련된 책임을 이사회에 부과할 필요가 있다.

IAIS, EU 및 호주는 ORSA 실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별된다. EU와 호주는 ORSA 실행의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ORSA에 대한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있지만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IAIS는 ORSA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조직의 최상부인 이사회와 최고경영층에 부과하고 있다. EU는 ORSA 실행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보험회사의 이사회에 ORSA의 평가 방향과 평가 결과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솔벤시 2의 ORSA 가이드스(안)에 따르면 ORSA는 이사회역의 책임이며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감사 및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즉 EU는 보험회사의 이사회가 ORSA 평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등 ORSA 실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보험회사가 ORSA 실행 요약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사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호주는 ORSA 실행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APRA는 보험회사의 이사회가 ORSA 프로세스에 대해 점검하며 ORSA 실행 결과를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ORSA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표 IV-5〉 이사회 역할

구분	주요 내용
IAIS	• ORSA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 부과
EU	• ORSA 실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 평가 방향 설정 및 평가 결과 검증
미국	• 보험회사는 요약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이사회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함
호주	• 이사회는 ICAAP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AAP를 승인하여야 함
한국	•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ORSA의 방향 설정, 평가, 절차, 결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짐 • 최고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부과되지 않음

우리나라는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¹²⁸⁾가 ORSA의 방향 설정, 프로세스 구축, 평가, 결과, 검증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이 아닌 위험관리위원회가 ORSA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주요국과 차별되는 부분이지만 기능면에서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충분히 최고경영진을

128)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이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현행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현재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¹²⁹⁾

4. ORSA 활용

ORSA의 활용 범위는 다양하지만 IAIS, EU, 미국, 호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은 ERM 체제이다. 그 밖의 영역에서는 나라마다 강조하는 부문에 따라 활용되는 부문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은 보험그룹리스크관리를 강조하며, EU는 최소한의 요건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의사결정 과정에 ORSA를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IAIS는 보험회사가 ORSA 실행의 일환으로 리스크관리에 근거하여 경제적 자본·감독목적 규제자본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성 분석에 근거하여 미래에도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즉 IAIS는 ORSA 실행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경영 과정에 ERM 체제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EU는 ORSA의 여러 활용 영역 중에서 감독당국이 반드시 감독하기를 희망하는 최소한의 부문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EU는 자본관리, 사업계획, 상품개발 등을 ORSA를 활용하여야 하는 핵심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EU 「솔벤시 2 지침」을 적용받는 보험회사들은 중기 자본관리를 위한 지배구조 체제 구

129)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 인적구성이 높거나, 리스크 전문위원이 부재한 위원회 구성의 특성 때문이다.

축, 미래 사업계획 수립, 리스크를 고려한 상품 개발에 ORSA 프로세스를 활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ORSA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ERM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은 리스크 고유의 특징·규모·복잡성에 비례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리스크관리와 자본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ERM 체제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그룹리스크를 포함함으로써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를 그룹 측면에서도 실시하게 되어 개별 보험회사의 시각을 보완하게 된다.

호주는 ORSA 실행을 통하여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호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ORSA를 포함하여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ORSA를 통하여 보험회사가 리스크 감내 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리스크 통제 및 성과 평가 등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ORSA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용은 방향성 측면에서 주요국의 ORSA 활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영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ORSA 활용을 요구하는 바가 없다는 점은 개선 사항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회사 측면에서 볼 때 일부 보험회사가 현재 리스크 감내 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리스크 통제에 활용하고 있어도 향후 보험회사들은 ORSA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ORSA 활용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표 IV-6〉 ORSA 활용

구분	주요 내용
IAIS	• 경제적 자본, 감독목적 자본요건, 재무자원을 결정
EU	• 최소한 자본관리, 사업계획, 상품 개발 및 설계에 적용
미국	• 보험회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규모, 복잡성에 비례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리스크와 자본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ERM 수준을 제고 • 그룹차원의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사업단위별 시각을 보완
호주	• ORSA는 리스크 및 자본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공 •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됨 •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 대상이 됨
한국	• 보험회사는 리스크 감내능력 설정, 리스크 통제 및 성과 평가 등의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

5.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보험그룹의 ORSA 의무화는 IAIS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국가별로 ORSA 실행 수준과 대상에서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EU는 보험그룹과 자회사에 대해 각각 ORSA 실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ORSA 대상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법적인 형태(legal entity)가 아닌 보험사업이 영위되는 방식에 따라 ORSA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호주는 자회사가 감독대상에 해당되면 모그룹이 감독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ORSA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IAIS는 보험그룹의 ORSA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그룹은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현재와 미래의 지급여력 상황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ORSA를 실행하여야 한다. IAIS는 가이드라인에서 보험그룹의 리스크 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곳에 명시된 보험그룹의 리스크는 다각적인 자본조달, 그룹 내 자본창출 또는 상호조달, 양질의 자본 차입, 그룹 내 자본대체, 무비용 자산 이동 등이다.

EU 역시 보험그룹을 ORSA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그룹과 자회

사는 다같이 ORSA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그룹 내 모든 자회사는 보험권 또는 비보험권, 피감독 또는 비(非)피감독 대상, EU 지역 또는 비(非)EU 지역에 관계없이 ORSA 실행의 대상이 된다. 한편 보험그룹 내 자회사들은 각각의 ORSA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보험그룹 전체가 단일 ORSA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그룹이 단일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각각의 자회사가 ORSA 실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그룹의 ORSA는 다음의 사항을 밝히도록 요구된다. 첫째, 추가 자본이 필요할 때 그룹 내 자기자본의 원천에 대한 식별, 둘째, 자기자본의 가용성(availa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대체성(fungibility), 셋째, 그룹 내 의도적인 자본 이전(transfer), 넷째, 그룹 전략과 자회사 전략의 일치, 다섯째, 그룹에 노출된 리스크, 전염리스크, 그룹 간 거래와 집중, 그룹 내 독립성, 통화리스크, 그룹 구조의 복잡성에 기인한 리스크 등이다.

미국도 보험그룹의 ORSA를 의무화한다. NAIC의 ORSA 보고 요건은 보험그룹 차원에서 정의된다. 보험그룹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총가용자본을 비교 및 결정한다. 다만 ORSA 실행은 보험그룹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사업이 관리 및 실시되는 방식과 일치하게 이루어진다. 감독당국은 보험그룹 차원에서 작성된 ORSA 보고서를 자회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 정보를 보험그룹에 요구할 수도 있다.

호주 역시 보험그룹의 ORSA를 의무화한다. 호주의 ORSA는 보험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리스크도 포함한다. 감독당국이 예를 들어 명시한 보험그룹 관련 리스크는 전염리스크, 거래상대방리스크(Counterparty Risk), 평판리스크, 기능 및 체제 분할로 인한 운영 종속 리스크 등이다. 한편 자회사가 감독대상에 해당되면 모그룹이 감독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하는 특징이 있다.

〈표 IV-7〉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구분	주요 내용
IAIS	• 그룹리스크 감안은 의무사항
EU	• 그룹리스크 감안은 의무사항 • 그룹과 자회사 모두 ORSA 실행
미국	• 그룹리스크를 감안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총가용자본을 비교·결정 • ORSA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업방식과는 일치
호주	• 그룹리스크 감안은 의무사항 • 자회사가 ORSA 대상이면 감독대상이 아닌 모그룹도 ORSA를 실행
한국	• 리스크의 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ORSA를 수행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안)은 주요 리스크의 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하며, 이때 ORSA를 연결기준으로 요구한다. 감독당국이 연결기준 지급여력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회사 및 자회사별 가용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내부통제 개선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안)은 그룹리스크에 대한 식별, 이에 대한 예시, 예외 대상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가. 문서화

ORSA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보험회사에 ORSA 관련 문서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IAIS는 포괄적 내용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 EU는 최소 기준만을 명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과 호주는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ORSA 요약 보고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지정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IAIS는 보험회사가 ORSA의 근거, 산출, 이로부터 발생하는 대응에 대해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정형화된 문서 종류나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등은 없다.

EU는 ORSA 문서화의 대상과 관련하여 최소 기준을 명시한다. 보험회사는 ORSA 정책, 각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¹³⁰⁾, ORSA 내부보고서, 감독당국 제출 ORSA 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ORSA 정책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ORSA 실행 프로세스와 절차에 대한 기술, 둘째, 리스크 구조, 리스크 감내수준, 전체 지급여력 니즈 간 연계성 고려, 셋째,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 분석,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 이들에 대한 사용 빈도, 데이터 질에 대한 요건, ORSA 실행 빈도와 시기, 비정기 ORSA 실행 상황 등이다.

미국 역시 ORSA에 대한 문서화를 의무화한다. 특히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내용은 ORSA 요약보고서 형태로 문서화해야 한다. 이때 감독당국은 포함할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정한다. ORSA 요약보고서는 보험회사의 ERM 체제를 기술하여야 한다. 리스크 문화와 지배구조, 리스크 식별과 우선순위, 리스크 선호·감내 수준·한도, 리스크관리 및 통제, 리스크 보고 및 의견 교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밖에 ORSA 결과를 내부적으로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

호주의 경우 자본기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는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서화 대상은 ICAAP 요약보고서(ICAAP Summary Statement)와 ICAAP 연차보고서(ICAAP Report)이다. 감독당국은 ICAAP 요약보고서에 대해 정형화된 보고 형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ICAAP 요약보고서와 ICAAP 보고서가 별도 문서여야 한다고 강제하지도 않는다. 다만

130) 각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자회사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및 자본배분 프로세스와 리스크 허용 한도간 연계, 자본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설명, ORSA 평가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 특화, 승인된 내부모델에 대한 변경(적용 가능하다면), 사업계획 기간 마지막 연도에 대한 전체 지급여력 니즈의 범위, 계속성 준수에 대한 평가, 리스크 구조와 자본요건 산출 가정 간 차이점 설명, 실행계획, 대내외 고려 대상에 대한 설명, 관리 계획 행동세분화, 이사회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

ICAAP 연차보고서는 매년 갱신되는 반면 ICAAP 요약보고서는 갱신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실질적으로 이들 보고서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ICAAP 요약보고서는 특정 시점 보험회사의 자본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서술을 요약한 최상위 문서이다. ICAAP 요약보고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특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¹³¹⁾ ICAAP 연차보고서 역시 특별한 보고형식을 강제하지 않는다. ICAAP 요약보고서와 ICAAP 연차보고서는 개념적으로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ICAAP 요약보고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작성되는 자본관리 프로세스를 요약하는 반면 ICAAP 연차보고서는 전년도 프로세스 이행 결과와 예상 자본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소 3년의 미래 전망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감독당국은 ICAAP 연차보고서가 매년 크게 변경될 수 있으나 ICAAP 요약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은 자본기준에 근거하여 ICAAP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 감독당국 보고

ORSA 실행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행위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보 고시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IAIS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ORSA 실행,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재정상황에 대해 감독하도록 요구한다. ORSA 결과는 감독당국 점검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한편 리스크관리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IAIS는 이들 정보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만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 여부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EU는 보험회사가 ORSA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ORSA는 감독당국 점검에 근거하여 감독된다.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이에

131) 제3장 69페이지 호주의 실무가이드 문서화 부문 참조.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한다. 한편 리스크관리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보 공시수준이 적용된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최소 1년에 1회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에 ORSA 요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ORSA 요약보고서는 보험그룹의 CRO 또는 ERM 프로세스 감독에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당국에 제출된다. ORSA 요약보고서를 승인한 책임자는 보험회사가 ORSA 요약보고서에 기술된 ERM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공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고유정보는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고수된다.

호주는 보험회사가 매년 감독당국에게 ICAAP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는 ICAAP에 따라 동 보고서를 준비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ICAAP 보고서의 형식에 대해 구속하지는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을¹³²⁾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과 CEO의 서명을 요구한다.

132) 첫째, 감독목적 요구자본 및 목표 자본에 대한 현행 수준 및 장래 수준(3년), 둘째, 전년도 ICAAP에서 서술한 계획된 결과와 당년도 ICAAP에 나타난 실제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셋째, 전년도 ICAAP 이후 ICAAP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넷째,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다섯째, 계획기간 내 자본사용 명세, 여섯째, 보험회사의 리스크 형태 또는 자본관리 프로세스 내 예상된 변화에 대한 평가, 일곱째, 전년도 ICAAP 연차보고서 이후 ICAAP에 대한 재검토, 여덟째, 문서화 및 분석을 지지하는 참고문서 등이다.

〈표 IV-8〉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구분	주요 내용
IAIS	• ORSA의 근거, 산출, 이로부터 발생하는 대응 등에 대해 문서화 • 정형화된 문서 종류나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EU	• ORSA 문서화 대상과 관련하여 최소 기준을 명시 • 문서화 대상: ORSA 정책, ORSA 프로세스, ORSA 내부보고서, 감독당국 보고서 • 정형화된 보고 양식 없으나 보고 양식을 예시
미국	• ORSA 결과와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보고서 제출 요구 • 그룹의 자회사일 경우 최소 연 1회 ORSA 요약보고서 감독당국 제출 요구 - 문서화 내용 명시: ERM 체제, ORSA 프로세스와 ORSA 결과
호주	• 내부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지만 정형화된 보고 양식 없음 • 요약보고서: 프로세스 • 연차보고서: 이행결과 및 평가결과
한국	•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 • 보험회사는 ORSA 보고서를 승인 후 2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 • ORSA 보고서 최소 포함 내용 설정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ORSA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며, 문서화 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ORSA 보고서는 이사회 승인 후 2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하며 감독당국 ORSA 보고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ORSA 통제 구조
- 리스크 평가 개요 및 결과
- 자체 지급여력 평가 개요 및 결과
-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경영진 보고 및 승인 결과

ORSA 문서화 대상과 감독당국 ORSA 보고서 대상에 대해 최소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주요국 대부분의 감독 규정 방향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사회 승인 후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각 회사별로 이사회 일정이

상이하여 제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회사 자율에 맡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ORSA 기반의 통제구조 및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ORSA 보고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리스크 기반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보험회사가 ORSA 도입·운용 시 직면하게 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7. 기타

가. ORSA 실행 빈도

ORSA 실행 빈도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비교 대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EU는 솔벤시 2의 규정이 그러하듯이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최소한의 여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IAIS는 보험회사가 ORSA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리스크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때에도 ORSA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EU 역시 ORSA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최소한 1년에 1회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리스크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한다. 즉, EU는 최소한의 ORSA 실행 빈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ORSA 실행 시기 및 빈도의 경우 보험회사가 리스크 구조와 자본 상황에 따른 전체 지급 여력 니즈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ORSA 실행 빈도와 시기에 대한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정기적으로 ORSA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즉 연 1회 정도를 권고한다. 또한 미국은 리스크 구조에 대한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ORSA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호주 역시 정기적으로 ORSA를 수행하며 연 1회를 예시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ORSA 평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다음의 경우 중요성을 판단하여 수시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 경제·금융·환경·보험영업 환경·자연재해 등 외부요인 등 외부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변화, 거액 보험계약 인수 등 보험회사 내부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표 IV-9〉 ORSA 실행 빈도

구분	주요 내용
IAIS	• 정기적 실시 • 리스크 구조 변화 시
EU	• 최소한 연 1회 • 리스크 구조 변화 시
미국	• 정기적 실시(연 1회)
호주	• 정기적 실시(연 1회)
한국	• 정기적 실시(연 1회) • 중요성을 판단하여 수시로 실시

나. ORSA 예외 대상

IAIS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ORSA의 실행을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보험회사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에 의해 예외 대상을 설정하며 그 기준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차별된다. 미국은 ORSA 적용 대상 예외 조건을 EU에 비해 높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ORSA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EU에서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IAIS는 ORSA 실행에 대한 예외 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ORSA 실행의 예외 대상은 2가지 범주에서 결정된다. 첫째는 솔벤시 2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대상이다. ORSA는 솔벤시 2의 일환이기 때문에 솔벤시 2 예외 대상은 ORSA 실행에서도 제외 된다. 솔벤시 2는 수입보험료 500만 유로, 책임준비금 2,500만 유로 미만의 매우 작은 규모의 보험회사를 예외 대상으로 설정한다. 둘째는 ORSA 실행으로 인한 효과가 적는데 반해 비용이 큰 보험회사들이 예외대상이 된다. EU는 시장점유율이 커질수록 ORSA 필요성이 커진다고 본다. 시장점유율이 큰 순서대로 보험회사를 서열화하였을 때 전체 시장 규모의 80%¹³³⁾에 해당되지 못하는 소형 보험회사들이 예외 대상으로 설정된다.

미국은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의 보험그룹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 ORS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험회사는 그룹이라 하더라도 ORSA 적용의 예외대상이 된다. 연간 직접수입보험료 5억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직접수입보험료 10억 달러 미만의 보험그룹은 예외 대상이 된다.

〈표 IV-10〉 ORSA 예외 대상

구분	주요 내용
IAIS	• 규정하지 않음
EU	• 수입보험료 500만 유로, 책임준비금 2,500만 유로 미만 • 시장점유율 80%
미국	• 연간 수입보험료 5억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수입보험료 10억 달러 미만의 보험그룹과 자회사
호주	•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한국	•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자산 총액 5조 원 미만의 보험회사

한편 호주는 ORSA의 대상에 엄격한 규정을 요구한다. ORSA 실행에 대해 예외 대상을 두지 않는다. APRA의 감독대상 보험회사는 모두 ORSA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들과 관련된 보험그룹은 APRA의 감독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ORSA

133) EIOPA(2013), “EIOPA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13/009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forward looking assessment of own risks(based on the ORSA principles)”, EIOPA/13/414, p. 36.

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를 ORS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 요건에 의한 ORSA 적용 예외 대상 역시 보험계약자의 미래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감독당국은 ORSA 제도 정착 후에 이들 회사를 위한 약식 제도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비례성

감독당국이 원칙 중심의 감독을 지향하는 경우 ORSA에 대한 정형화된 보고 양식이 권고되지 않는다. IAIS를 비롯하여 EU, 미국, 호주는 ORSA를 실행하고, 검토할 때 비례성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ORSA 프로세스 사업 특징, 사업 규모 및 사업 복잡성 등을 반영한다.

IAIS는 보험회사가 ORSA 평가에 리스크의 본질, 규모, 복잡성 등의 비례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례성 원칙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하지만 IAIS는 효과적인 독립 감사, 내부모형의 유효성, 미래지향적 계속성 분석, 대내외 보고 등 최소 범위를 명시한다.

EU는 가이드라인에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다. 보험회사는 사업 고유에 기인한 리스크 특징·규모·복잡성에 비례하는 ORSA 프로세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EU가 밝힌 비례성 원칙 최소 적용범위는 지급여력 평가 방법, 각 프로세스 기록, ORSA 내부 보고서, 감독당국 제출 ORSA 보고서 등이다.

미국 역시 ORSA 프로세스는 리스크의 본질, 규모, 복잡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감독대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ORSA는 규모, 사업의 복잡성, 특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기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ORSA는 규모, 사업 통합, 복잡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각 보험회사의 ORSA는 보험회사의 상황에 맞

게 재단된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보험회사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하며, 제한된 사업과 단순한 투자 형태를 띠는 보험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단순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ORSA 실행의 원칙으로 비례성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ORSA 가이드라인(안) 총칙에 따라 보험회사의 ORSA는 경영활동에 내재된 위험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한다. 다만 감독당국이 비례성 원칙 준수를 명시적으로 밝힌 부문은 ORSA 체제 구축과 운용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현재 언급되지 않고 있다.

〈표 IV-11〉 비례성

구분	주요 내용
IAIS	• 적용범위: 다수의 영역 • 최소 적용범위: 효과적인 독립 감사, 내부모델의 유효성, 미래지향적 계속성 분석, 대내외 보고
EU	• 가이드라인에 비례성 원칙 명시 • 적용범위: 지급여력 평가 방법, 각 프로세스 기록, ORSA 내부 보고서, 감독당국 ORSA 보고서
미국	• ORSA는 리스크의 본질, 규모, 복잡성을 반영하여야 함
호주	• 감독대상인 보험회사의 ICAAP는 규모, 사업의 복합성,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한국	• ORSA는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여야 함

라. 독립적인 검증

ORSA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ORSA 프로세스 전반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IAIS는 ORSA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EU는 ORSA 관련 지배구조에 대해서만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한다. 미국은 독립적인 검증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으나 호주는 독

립적인 검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IAIS는 비례성 원칙 적용 대상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대내외 감사를 요구한다. 보험회사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CRO 또는 전문가에 의한 대내외 감사를 통하여 비례성 적용의 효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IAIS는 현실적으로 CRO가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EU는 보험회사가 ORSA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을 의무화 하지 않지만 ORSA를 적용하는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한다. ORSA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이사회와 감독당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권고된다. 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보험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필요가 클 것으로 인식된다.

미국은 독립적인 검증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 사항이 없다. 대신 ORSA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 프로세스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호주는 자본기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ORSA에 대하여 정기적이며 정밀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독립적인 검증 프로세스의 일화에 따라 감사자는 자본관리 행위와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ORSA 실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부 감사, 외부 감사, 리스크관리 전문가,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ORSA 가이드라인(안)은 ORSA 통제구조 3단계¹³⁴⁾ 중 최종단계를 내부감사 또는 독립적인 감사로 설정하여 ORSA 프로세스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안)은 독립적인 감사 시기를 연 1회 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련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감사조직은 자산 및 영업부문에 한정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ORSA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미흡하거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34) 1단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2단계 독립적인 부문의 전사적인 ORSA, 3단계 내부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인 부문에 의한 점검.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ORSA 프로세스별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내부자본 및 리스크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리스크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IV-12〉 독립적인 검증

구분	주요 내용
IAIS	• 비례성 원칙 효과 제고 • 독립적인 대내외 검증요구
EU	• 검증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 ORSA 지배구조와 관련 검증 요구
미국	• 검증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 모형 검증 프로세스는 반드시 기술
호주	• 독립적 검증 또는 자격 있는 제3자 검증
한국	• ORSA 통제 구조 3단계 중 최종단계를 내부 감사 또는 독립적인 감사로 설정 • 감사 빈도는 연 1회 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 시 점검할 것을 요구

V. ORSA 도입·운영 시 당면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또한 ORSA는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국제기구 등에서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있는 정성적 감독제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를 위해 ORS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를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ORSA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ORSA 도입·운영에 앞서 현행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IMF/WB는 “금융부문평가제도(FSAP)”를 위한 국제보험감독기준으로 IAIS의 보험핵심원칙·기준·가이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IAIS의 보험핵심원칙·기준·가이드는 진전된 보험감독체계 및 금융시장 발달 정도, 금융위기 교훈, IMF/WB의 ‘금융부문평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¹³⁵⁾ 이러한 점 때문에 각국 감독당국은 IAIS의 보험핵심원칙·기준·가이드를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등은 ORSA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IAIS의 보험핵심원칙·기준·가이드를 참조하였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이렇게 인식되는 IAIS의 보험핵심원칙·기준·가이드

135)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12), 『IAIS 보험핵심원칙 II』, 발간사.

스를 토대로 ORSA 도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국제적 정합성을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자에게 IAIS의 보험핵심원칙 · 기준 · 가이드스를 충족시키는 ORSA를 활용하여 ORSA와 통합된 ERM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감독당국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리스크관리와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렇듯 감독당국의 ORSA 도입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ORSA 도입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많은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ORSA 체제 구축 · 운영을 모든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AIS와 EU가 ORSA에 대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NAIC가 대형보험회사 및 대형보험그룹에만 ORSA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ORSA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IAIS 및 EU의 비례성 원칙 또는 미국의 적용 대상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중소형사의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이에 시장경쟁의 제한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IAIS, EU, 미국보다 더 신중하게 ORSA의 적용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선진보험회사와 달리 다각화 · 그룹화 · 글로벌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독당국은 더욱 신중하게 ORSA 적용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ORSA와 현행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현재 RBC와 RAAS 등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보고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고받은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계량화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사별 감시 수위 및 종합검사 주기를 차별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RAAS 등을 통해 보고받은 정량적, 정성적 정보들은 ORSA 요건들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RAAS가 주로 종합검사 등 감독조치의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요인의 발굴 및 시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ORSA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RAAS와 ORSA를 이중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현행 제도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ORSA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보험회사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RAAS를 ORSA로 대체하는 방안, RAAS에 ORSA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과 같은 RAAS와 ORSA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험회사의 보고 부담을 경감시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국내보험회사가 다각화·그룹화·글로벌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ORSA 보고 양식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규모·복잡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ORSA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회사들을 몇몇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ORSA 보고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ERM 현황 및 ORSA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RAAS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보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ORSA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포괄적 리스크 평가,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평가, 이사회 역할 등에서 ORSA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ORSA 도입·운용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독당국이 ORSA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용 기간 동안 리스크관리 실태 조사와 보험회사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ORSA는 보험회사에게 현행보다 더 강력하게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ORSA는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을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ORSA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주관하는 리스크관리 부문, 자본관리를 주관하는 경영기획 부문, 그리고 수익관리를 주관하는 수익관리 부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ORSA 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그림 V-1〉 참조).

```

graph TD
    A[리스크관리] --- B[경영 성과  
수익관리]
    A --- C[지급여력 적정성  
(감독목적, 내부 목적)  
자본관리]
    B --- C
    B --- D[자본비용  
(cost of capital)]
    C --- D
  
```

그러나 ERM이 ORSA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통합적 리스크관리와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ORSA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통합적 리스크관리와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보험회사들은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ERM 체제를 구축,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보험회사들은 감독당국의 ORSA 도입에 대비하여 ORSA 체제와 ERM 체제를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ORSA와 ERM이 프로세스 측면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Protiviti(2013)에 따르면 리스크관리 원칙인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감시에 대해 ORSA는 ERM과 달리 이사회 및 소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그 대신에 경영활동 검증 및 ORSA 요약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관리 원칙인 리스크 측정에 대해 ORSA는 ERM과 달리 데이터 지배구조 및 데이터 관리 체제, 보고 시스템, 사용된 리스크 측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복합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및 전망 등을 요구하고 있다.¹³⁶⁾

따라서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보험회사 역시 ERM과 지급여력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부문, 자본관리 부문, 그리고 수익관리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ORSA 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ERM 모범사례와 ORSA 요건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유념하여야 한다.¹³⁷⁾ 왜냐하면, ERM 모범사례와 ORSA 요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이해해야만 보험회사가 ORSA 요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ORSA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

136) protiviti(2013)가 제시한 리스크관리 원칙과 ORSA 요건의 관계는 〈부록 Ⅱ〉에서 살펴볼 수 있다.

137) 〈부록 Ⅱ〉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는 감독당국, 주주 및 신용평가기관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험회사를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지급여력 및 업무적정성의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며, 신용평가기관은 비교우위, 경영진 및 경영전략, 실적 및 수익성 등의 재무적 능력 관점에서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주주는 주가, 1주당 순자산액, 경영진 능력 등처럼 가치의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을 평가한다.

ORSA는 보험회사에게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별 특성을 리스크관리와 지급여력의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영자 및 이사회가 감독당국 및 보험계약자에게 감독목적 지급여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경제적 가치로서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ERM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자 및 이사회가 신용평가기관에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ERM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ORSA는 보험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에 이해관계자 특성을 감안하여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진보험그룹은 ORSA를 아직 적용받지 않음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ORSA 요건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선진보험그룹인 알리안츠 그룹을 살펴보면, 동 그룹은 연차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의 자본요건에 의한 자본적정성(regulatory capital adequacy),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요건에 의한 자본적정성(external rating agency capital adequacy), 그리고 내부 리스크 자본 모형에 의한 자본적정성(internal capital adequacy)을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³⁸⁾ 취리히 그룹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감독자 관점, 신용평가기관 관점, 내부이용자 관점을 적용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³⁹⁾

138) 세부 내용은 Allianz Group의 「Annual Report 2012」(pp. 185~189)를 참조하기 바란다.

139) 세부 내용은 Aviva plc의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2」(pp. 56~58)를 참조하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ORSA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 역시 선진보험그룹처럼 감독자 관점, 신용평가기관 관점, 내부이용자 관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진보험그룹 사례를 고려할 때 ORSA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감독 관점, 신용평가 관점, 내부적 관점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ORSA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포괄적 리스크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ORSA는 보험회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불확실성을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미국 등은 ORSA 도입을 추진하면서 보험회사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규모, 영업활동 특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중요한 리스크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IAIS는 유동성리스크 및 전략리스크 등도 중요한 리스크로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유럽, 미국 등의 감독당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ORSA는 보험회사가 ORSA 체제와 통합된 ERM에서 리스크들을 포괄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ORSA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보험회사 역시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는 새로운 리스크를 인식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국제기구 등의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포지션을 지녀야 한다.

참고문헌

- 강수원(2014), “자체 리스크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ORSA 도입준비 작업반 회의자료.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 변화」, 연구보고서 1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일용(2005), 「신BIS협약: 필라 2의 이행」, 『Risk Review』, 2005년 여름호, pp. 195~202, 금융감독원.
- 구정환 · 이지연(2011),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11-1,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감독원(2012a),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 _____ (2012b),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 _____ (2013a), 「2013년도 보험감독업무 추진계획」, 업무설명회 자료.
- _____ (2013b), 「보험 검사매뉴얼」, 2013년 2/4분기.
- _____ (2014),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가이드라인(안)”.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2012), 『IAIS 보험핵심원칙 II』.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2011),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경영보고서 2010-6, 보험연구원.
- 류건식 · 정석영(2001),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pp. 3~38,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_____ (2004),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수준의 국제비교분석」, 『보험학회지』, 제68집, pp. 125~151, 보험학회.
- 박병수(2009),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리스크관리상의 시사점」, 금융감독원.
- 송재만(2011), 「Risk Appetite 설정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월간 하나금융』, 2011년 9월호, pp. 14~2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오세경 · 김진호 · 이건호(1999), 『위험관리론』, 서울: 경문사.

- 오창수·신종욱·권명성·이원균(2012), 「Solvency II 표준·내부모형 도입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계리학회.
- 유병순(2009), 「미국·유럽 보험회사의 지급불능과 운영리스크」, 『Risk review』, 2009년 상반기, pp. 83~100, 금융감독원.
- 이봉주(1999),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행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11집, 1999년 봄호, pp. 91~123,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이봉주·박동규(1999), 「손해보험사의 리스크관리행태 연구」, 『보험학회지』, 제54호, pp. 47~73, 보험학회.
- 장동식(2009),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조사보고서 2009-2, 보험연구원.
- 장동식·김경환(2012),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2-3, 보험연구원.
- 정신동(2013), 「솔벤시 II와 RBC제도의 비교분석: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3년도 정기학술대회, 한국금융학회.
- 정지훈(2007), 「전략·평판리스크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 『Risk Review』, 2007년 봄, pp. 93~117, 금융감독원.
- 조재린·김해식·김석영(2013),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 정책세미나: 재무건전성 2020, 보험연구원.
- _____ (2014),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4-2, 보험연구원.
- 포스코경영연구소(2011), “전사적 관점의 리스크관리의 이해”.
- 최영목·장동식·김동겸(2008), 「보험회사의 리스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8-1, 보험연구원.
- 황정욱(2009), 「국제사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 대책 및 과제: 국제통화기금과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Risk Review』, 2009년 하반기, pp. 91~107, 금융감독원.

植村信保(2011), “保険会社のERMと監督当局の関係”, 平成23年度日本保険学会大会.

_____(2014), “保険会社ERMの現状と金融行政の動向”, 日本保険学会・関東部会.

日本金融庁(2013), “経済価値ベースのソ「ルベンシー規制の導入に係るフィールドテスト”.

_____(2014a), “保険検査マムニュアル”.

_____(2014b),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Allianz Group(2013), Annual Report 2012(<https://www.allianz.com/en>).

APRA(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2009), “Life and General Insurance Capital Project”, APRA Letter.

_____(2010a), “CPG 110 -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and Supervisory Review”, APRA Prudential Practice Guide.

_____(2010b), “Review of capital standards for general insurers and life insurers”, APRA Discussion Paper.

_____(2010c), “The revised Life and General Insurance Capital Project timetable and process”, APRA letter.

_____(2013), “CPG 110-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ment Process and Supervisory Review”, APRA Prudential Practice Guide.

Ashby, Simon, Tommaso Palermo, and Michael Power(2012), “Risk Culture in Financial Organisations: An Interim Report”, Centre for Analysis of Risk and Regul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Aviva plc(2013),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2(<http://www.aviva.com>).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6),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 Framework Compression Versio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CBS(2010),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Final Document”,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asel.
- CEIOPS(the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Supervisors, 2003), “Internal control for insurance undertakings”.
- _____(2008),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 Issues Paper, CEIOPS-IGSRR-09/08.
- _____(2009a), “CEIOPS's advice for level 2 implementing measures on solvency II :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Requirement”, CEIOPS-DOC-50/99.
- _____(2009b), “Lessons learned from the crisis(Solvency II and beyond)”, CEIOPS-SEC-107/08.
-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2004), “Enterprise Risk Management - Integrated Framework”.
- Cummins, J. D., M. Grace and R. D. Phillips(1999), “Regulatory Solvency Prediction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Risk-Based Capital, Audit Ratios, and Cash Flow Simula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6, pp. 417-458,
- Cummins, J. D., S. Harrington and R. W. Klein(1995), “Insolvency Experience, Risk-Based Capital, and Prompt Corrective Action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9, pp. 511~527.
-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2011), “Section I: General considerations No. 4.1. Consultation Paper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EIOPA-CP-11/008.
- _____(2012),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 11/008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_____(2013), “EIOPA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 13/009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forward looking assessment of own risks(based on the ORSA principles)”, EIOPA/13/414.
- EP(European Parliament, 2009),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solvency II)”,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2010), “Intensity and Effectiveness of SIFI Supervision-Recommendations for Enhanced Supervision”, Basel.
- _____(2012), “Increasing the Intensity and Effectiveness of SIFI Supervision: Progress Report to the G20 Ministers and Governors”, Basel.
- _____(2013), “Thematic Review of Risk Governance, Peer Review Report”, Basel.
- Grace, M., S. Harrington and R. W. Klein(1998), “Risk-Based Capital and Solvency Screening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5, pp. 213~243.
- G30 working group(2013), “A New Paradigm: Financial Institution Boards and Supervisors”, Special Report(http://www.group30.org/images/PDF/Banking_Supervision_CG.pdf).
- G30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Group(2012), “Toward Effectiv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Special Report.
- Harrington, S. E. and G. R. Niehaus(2004),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2nd ed., McGrawHill/Irwin.
- Hoyt, Robert and A. P. Linbenberg(2006), “The Value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Evidence from the U.S. Insurance Industry”, Working paper.
- FaRR, I., H. Myller, M. Scalon and S. Stronkhorst(2008), “Economic Capital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SOA Monograph.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2002), “Principles on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rinciples No. 5.

____(2005), “A new framework for insurance supervision: towards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____(2006), “Road map for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____(2007), “Guidance paper 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urpose”, Guidance paper No. 2.2.6.

____(2008), “Standard 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urpose”, Standard No. 2.2.6.

____(2011a), “Revision of the insurance core principles process for review and construction”.

____(2012), “Insurance Core Principles, Standards, Guidance And Assessment Methodology 1 October 2011 as amended 12 October 2012”.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Japan: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Update”, IMF Country Report No. 12/210.

____(2013), “European Union: Publication of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Documentation-Technical Note on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Authority”, IMF Country Report No. 13/73.

____(2014),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IMF Country Report No. 14/127.

Kris DeFrais(2011),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 in the U.S.”, 2011 Casualty Actuarial Society Spring Meeting.

Linbenberg, P. A. and R. Hoyt(2003), “The Determinants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om the Appointment of Chief Risk Officer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Vol 6(1), pp. 37~52.

- LIWMPC(The Life Insurance and Wealth Management Practice Committee, 2014), “Assessing ICAAP in the FCR”,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 Insights(<http://www.actuaries.asn.au/Library/Events/Insights/2014/Insights140319.pdf>).
- McDonnell, W.(2002), “Managing risk: practical lessons from recent “failures” of EU insurers”, FSA Occasional Papers Series 20.
- Milliman(2013), “ORSA: An international requirement”.
- Palmer, John, and Chang Su Hoong(2010), “How Can Financial Supervisors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Private Sector Opinion No. 18,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ashington, D.C.
- Pottier, S. W. and D. W. Sommer(2002), “The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Summary Risk Measures in Predicting Insurer Insolvencies”,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21, pp. 101~116.
- Protiviti(2013), “New ORSA Requirement Set to Raise Expectations of Risk Management”, pp. 4~5(<http://www.protiviti.com/en-US/Documents/White-Papers/Risk-Solutions/ORSA-Requirement-Set-to-Raise-RM-Expectations-whitepaper-Protiviti.pdf>).
- Sharma, Paul(2002),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 : Report of London working group on Solvency II”, conference of insurance supervisory servic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paris.
- Towers Waston(2013), “Risk management - the next step in the evolution of prudential regulation”, Insights.
- Vaughan, T. M(2009), “The Implication of EU Solvency II for U.S. Insurance Regulation”, Policy Brief, Networks Financial Institute at Indiana State University.
- Zurich Insurance Group(2013), Annual Report 2012(<http://www.zurich.com>).

부록 I. ORSA 관련 보고서

1. IAIS

제정년월	구분	보고서
2002년 5월	Principles No. 5	Principles on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2003년 10월	Principles No. 1	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 ICP 18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2005년 10월	Framework	A new framework for insurance supervision: towards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2006년 2월	Common structure	Roadmap for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2007년 2월	Common structure	The IAIS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2007년 10월	Guidance paper No. 2.2.6	Guidance paper 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urpose
2008년 10월	Standard No. 2.2.6	Standard 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capital adequacy and solvency purpose
2011년 10월	ICP 16 (구 : ICP 18)	Insurance core principles, standards, and guidance and assessment methodology: ICP 16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solvency purposes

2. EU

발간년월	작성기관 또는 작성자	보고서 명
2002년 12월	William McDonnell	Managing risk: practical lessons from recent “failures” of EU insurers, FSA Occasional Papers Series 20.
2002년 12월	Sharma P. et al.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 Report of London working group on Solvency II”, conference of insurance supervisory servic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paris
2003년 10월	CEIOPS	Internal control for insurance undertakings
2008년 5월	CEIOPS	Issue paper,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 CEIOPS-IGSRR-09/08
2009년 3월	CEIOPS	Lessons learned from the crisis(Solvency II and beyond) CEIOPS-SEC-107/08
2009년 11월	EP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solvency II)
2009년 10월	CEIOPS	CEIOPS’s advice for level 2 implementing measures on solvency II: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Requirement, CEIOPS-DOC-50/99
2012년 7월	EIOPA	EIOPA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11/008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EIOPA-258/12
2013년 9월	EIOPA	EIOPA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 no. 13/009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forward looking assessment of own risks(based on the ORSA principles, EIOPA/13/414

부록 Ⅱ. ERM(모범사례)과 ORSA 비교

리스크관리 원칙	문서 및 활동	ERM (모범사례)	ORSA 요건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 의 감시	리스크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체제	✓	✓
	이사회 및 소위원회 관련 규정	✓	
	리스크 선호 설명서	✓	✓
	의견교환 규약	✓	✓
	전략적 계획 수립 프로세스	✓	✓
	전략 문서	✓	✓
	Risk Inventory	✓	
	ORSA 요약보고서 검증		✓
	경영활용 검증(Use Test)		✓
정책 및 업무관행	중요 리스크 정책*	✓	✓
조직 구조	리스크 방어 체계(3층 방어)	✓	
	역할, 책임 및 검증 요약	✓	
	위임전결 규정	✓	
	리스크 지배구조 설명		✓
	사업단위별 책임 열거		✓
	조직 내 책임자(전략, 리스크 선호, 리스크 감내 및 한도, 전략 관리, ERM 평가 등)		✓
리스크 인식 및 평가	현행 리스크 인식 프로세스 및 새로운 리스크 인식 프로세스	✓	✓
	리스크 평가 및 순위 결정 방법	✓	✓
	리스크 선호, 리스크 감내 및 한도 설정	✓	
	리스크 열 지도(Risk Heat Maps)	✓	✓
리스크 측정 및 데이터	전사적(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	✓
	전사적(그룹) 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및 전망	✓	✓
	모형 검증(Model Validation)	✓	✓
	데이터 지배구조 및 데이터 관리 체제	✓	
	보고 시스템	✓	
	사용된 리스크 평가모형 및 스프레드 스위트	✓	
	복합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및 전망		✓

(계속)

리스크관리 원칙	문서 및 활동	모범사례	ORSA 요건
리스크 보고, 감시, 관리	리스크 보고 및 의견교환	✓	✓
	단계적 확대 규약(Escalation Protocols)	✓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 통제	✓	✓
	이슈 발굴 및 해결	✓	
	ORSA 요약보고서의 구성요소 및 관련 문서		✓
설명 필요 사항	범위, 빈도, 2·3차 방어자 독립성 등을 정의	✓	
	감사 결과 적시 조치	✓	
	위원회·리스크보고 참여자(2차 방어자)	✓	
	내부 감사 및 지속적 지배구조 활동		✓
필요 자원	리스크 선호와 ICP의 정합성	✓	✓
	리스크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	✓	

주: * 요구되고 있는 리스크관리 정책들로는 보험영업정책, 투자정책, 보험금 지급정책, 자산부채 관리정책, 재보험정책, 운영리스크 정책, 기타 중요 리스크 정책 등이 있음. 중요한 리스크에 포함되지만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로 한정하지 않음.

자료: protiviti(2013), "New ORSA Requirement Set to Raise Expectations of Risk Management", pp. 4~5(<http://www.protiviti.com/en-US/Documents/White-Papers/Risk-Solutions/ORSA-Requirement-Set-to-Raise-RM-Expectations-whitepaper-Protiviti.pdf>).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김경환, 강민규, 이해량 2014.8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장 동 식

고려대학교 통계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dsjang@kiri.or.kr)

이 정 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jhlee@kiri.or.kr)

조사자료집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발행일 2014년 8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